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Research on local public architectural support center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엄운진 Um, Woonjin
백선경 Baek, Seongyeong
김준래 Kim, Junlae
한승연 Han, Seungyeon
박태홍 Park, Taehong

(aur)

일반연구보고서 2024-7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Research on local public architectural support center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지은이	엄운진, 백선경, 김준래, 한승연, 박태홍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2. 18.)
인쇄	2024년 12월 26일, 발행: 2024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10,000원, ISBN: 979-11-5659-495-6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책임

엄운진 부연구위원

| 연구진

백선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부연구위원

한승연 연구원

박태홍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부원장

김영현 건축정책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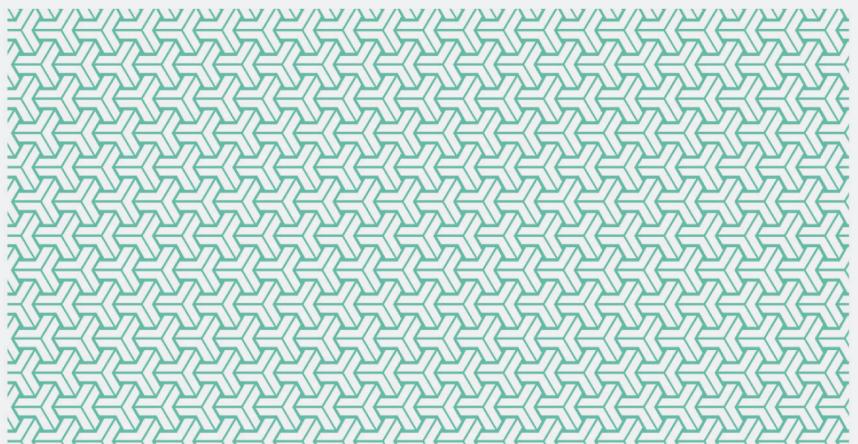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요약

Summary



공공건축 관련 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제도가 도입되는 초창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건축조성과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단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설계공모 활성화**”를 도입하여서 의무대상을 규정하였다. 2019년부터는 2차적으로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를 의무화 하여서 사전검토 전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축기획, 사전검토 이후의 검토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2년 경북교육청까지 총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상에 건축기획을 위한 일련의 제도들과 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연계하여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지역 공공건축센터 설립 방안, 건축기획 연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주제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의 연구였기 때문에 기획 이후로 실행단계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유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광역시, 광역도 단위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교육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은 직영, 산하기관 위탁 지정 운영 등의 형태로 구분되었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 중인 11개소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건축서비스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광역지자체에서도 직접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건축물의 품격제고와 관련한 업무 중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된 경우 지역 소관의 사전검토 업무를 의뢰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 외에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의 업무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현황 파악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후속 과제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함에 따라서, 지자체의 연간 사업수행 건수 및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지역현황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조직 운영방안은 결국 지자체의 현실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제어

공공건축,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차례

CONTENTS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5
제2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	9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1
1)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11
2)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15
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8
1)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18
2)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21
제3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 유형)	25
1. 도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26
2.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28
1)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현황	28
2) 충청남도 본청 발주 공공건축 사업의 절차	28
3) 충청남도 산하 시·군 발주 사업	29
3.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30
1) 경기도 본청 발주 사업	30
2) 경기도 산하 시·군 발주 사업	31
4.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31
1) 경상남도 본청 발주 사업	31
2) 경상남도 산하 시·군 발주 사업	32

차 례

CONTENTS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33
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행정시 발주 사업	33
 제4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교육청 유형)	 35
1. 교육청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36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38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38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43
3.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45
1) 경기도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45
2) 경기도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48
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49
1)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49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52
5.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54
1) 충청남도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54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57
6.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59
1) 경상북도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59
2)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61
 제5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개선방향	 63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의 쟁점	64
2. 개선방향	67

차례

CONTENTS

제6장 결론	69
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7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3
참고문헌	77
SUMMARY	79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 현황	3
[표 1-2] 건축서비스법 내 공공건축지원센터	6
[표 1-3] 건축서비스법 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8
[표 2-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의 조직 구성	10
[표 2-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의 담당업무	11
[표 2-3]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12
[표 2-4]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18
[표 2-5]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 유형의 조직 구성	26
[표 2-6]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 유형의 담당업무	27
[표 3-1]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28
[표 3-2]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30
[표 3-3]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31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2-2023년)	33
[표 4-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조직 구성	36
[표 4-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담당업무	37
[표 4-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39
[표 4-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수(2021-2023년)(단위: 건)	40
[표 4-5]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운영건수(2021-2023년)(단위: 건)	42
[표 4-6]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46
[표 4-7]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50
[표 4-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수(2021-2023년)(단위: 건)	50
[표 4-9]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2-2023년)	55
[표 4-10]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 유형별 운영건수(2022-2024년)(단위: 건)	56
[표 4-11]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 신청기관별 운영건수(2022-2024년)(단위: 건)	57
[표 4-12]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2-2023년)	60
[표 4-13]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수(2022-2024년)(단위: 건)	61
[표 4-14]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운영건수(2023-2024년)(단위: 건)	61
[표 5-1] 건축서비스법 내 공공기관의 책임	64
[표 5-2] 건축서비스법 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66
[표 5-3] 건축서비스법 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67
[표 5-4] 신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유형별 조직 가이드라인	68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6-1] 지역공센 설립된 지자체 건축물의 품격제고 업무 구분	70
[표 6-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광역 시도 유형의 담당업무	71
[표 6-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담당업무	71
[표 6-4] 지역공센 미설치 지자체 건축물의 품격제고 업무 구분	7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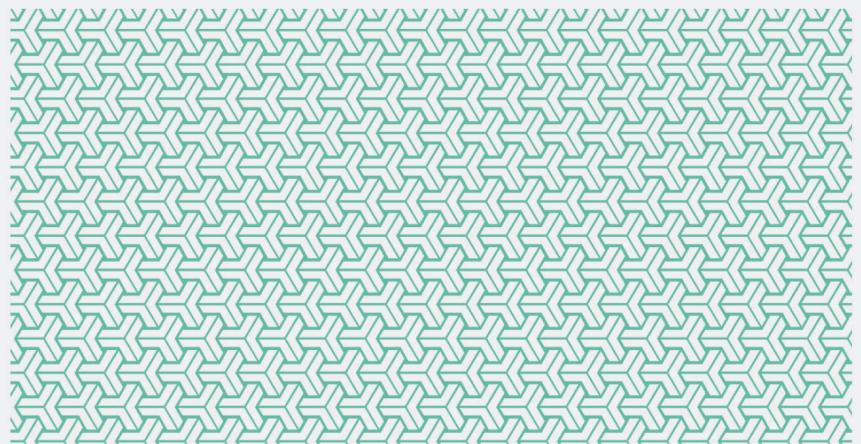
[그림 1-1] 공공건축지원센터 변경 지정·공고	7
[그림 2-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의 기술, 설계 공모의 기술	12
[그림 2-2]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13
[그림 2-3]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추진 절차 - 사업부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	14
[그림 2-4]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추진 절차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업무 수행	15
[그림 2-5]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	16
[그림 2-6]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젝트 주요 사례(2015~2016)	17
[그림 2-7] 부산광역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19
[그림 2-8]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추진 절차	20
[그림 2-9] 부산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사례(공공건축 현황 및 추진사업 파악)	21
[그림 2-10] 부산광역시 자치구 사업 추진 절차	22
[그림 2-11] 부산광역시 자치구 사업 추진 절차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수행 및 자치구 설계공모 부서(팀)부재 시	23
[그림 3-1] 충청남도 밸주 사업 추진 절차	29
[그림 3-2] 경기도 밸주 사업 추진 절차	30
[그림 3-3] 경상남도 밸주 사업 추진 절차	32
[그림 3-4] 제주특별자치도 밸주 사업 추진 절차	33
[그림 3-5] 제주도 공간환경전략계획 사례(서귀포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 전략)	34
[그림 4-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	38
[그림 4-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학교 사업 추진 절차	38
[그림 4-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일반)	39
[그림 4-4]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절차	41
[그림 4-5]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41
[그림 4-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건축기획 업무 센터 위탁)	42
[그림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 추진 절차(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토대상)	44
[그림 4-8]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일반)	45
[그림 4-9]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업유형별 신청서류 목록	47
[그림 4-10]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47
[그림 4-1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학교)	48
[그림 4-1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본청)	49
[그림 4-13]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교육지원청)	51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1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추진 절차(본청) —————	52
[그림 4-1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추진 절차(교육지원청) —————	53
[그림 4-16]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일반) —————	54
[그림 4-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조성절차(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제외) —————	57
[그림 4-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조성절차(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	58
[그림 4-19]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 조성절차 —————	59
[그림 4-2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업무 흐름도(신·증·개축) - 신설학교 제외 ·	60
[그림 4-2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조성절차 —————	6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공공건축 관련 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제도가 도입되는 초창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건축조성과정에 있어서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단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활성화**”를 도입하여서 의무대상을 규정하였다. 2019년부터는 2차적으로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제도를 의무화 하여서 사전검토 전 단계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축기획, 사전검토 이후의 검토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4년 설립되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2년 경북교육청까지 총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2024년 현재, 지역공공건축센터는 총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크게 지자체, 교육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시와 도 단위로 구분된다. 지자체 시 유형은 2개소이고, 도 유형은 4개소이다. 교육청 유형은 5개소이다.

국토부로 설립 인가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서울('20.2.24), 충남('20.5.26), 부산('20.6.19), 경기도('21.7.29), 경남('21.9.16), 제주('22.7.18) 순으로 인가되었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20.3.24), 경기도교육청('20.10.23), 대구시 교육청('21.6.23), 충남교육청('22.6.27), 경북교육청('22.11.22) 순으로 인가되었다.

매년 2-3개소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립되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유형(총11개소)

		개소
지자체	시	서울시, 부산시
	도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2023년 이후 설립되는 지자체나 교육청은 없는 상황이다. 각 기관별로 설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되고는 있으나 예산 및 조직상의 문제로 추가적인 설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전검토 업무와 관련하여서 국가 및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에 국가공센의 수행비율은 89%수준으로 진행되었으나 2023년에 50%까지로 운영되었다. 2024년 지역공센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감소하였으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수는 유사한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2023년부터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60건 정도가 수행되고 있다. 지역공센의 경우 연간 수행건수는 평균적으로 31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표 1-1]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5개년 평균
국가	1,195	1,301	891	807	815	1,001
지역	151	327	379	512	403	354
안전원				256	299	278
계	1,346	1,628	1,270	1,575	1,516	1,449
국가공센 수행율	(89%)	(80%)	(70%)	(51%)	(54%)	(69%)
지역 공센설립 (누적)	3 (3)	2 (5)	1 (6)	-	-	-
교육청 공센설립 (누적)	2 (2)	1 (3)	2 (5)	-	-	-
지역공센 계	5 (5)	3 (8)	3 (11)	-	-	-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연구의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상에 건축기획을 위한 일련의 제도들과 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주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업무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건축기획 조성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부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 전·후 공공건축물 조성절차, 수행주체

출처: 연구진 작성

건축서비스산업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발주기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건축기획, 설계 공모에 대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인 건축공간연구원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없다. 지역 공건축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자체 사업이 존재한다. 업무조직 상 지자체의 특정부서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까지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각 자치체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 등에서 설립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기관에서도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의 방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별로 공공건축물 조성절차에 따라서 사업부서 및 지역
공센의 수행 내용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지역 공공건축센터의 업무는 현재
사전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동일하다. 다만

만,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업무들과의 세부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파악하여서 향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제도 운영상에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별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각 사업현황, 행정조직 상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위상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1차 자료로 기관별 홈페이지 및 문현조사를 통해서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2차 자료로 기관별 면담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연구분석 틀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여서 각 기관별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광역 및 교육청 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제도

□ 건축서비스법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와 관련한 규정은 건축서비스법에 명시되어 있다. 건축서비스법의 제4장에서는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하여서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부터 ‘설계의도 구현’, ‘건축기획 수행’,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의 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법에서는 건축기획 업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산과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표 1-2] 건축서비스법 내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5.15. 타법개정)
<p>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u>건축기획</u> 업무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u>사전검토</u>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u>재검토</u> 업무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u>자문에 대한 응답</u> 등 <p>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u>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⑤ <u>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시행령)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u>10명 이상의 전문인력</u>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별도로 국가를 표기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법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법제24조의 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구분된다.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2014년 6월 23일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지정하였고, 2023년 1월 2일에 건축공간연구원을 변경 지정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건축지원센터 변경 지정 · 공고(법인 변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1. 공공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공간연구원
2. 법인등록번호	111222-0000361	164771-0009135
2. 대표자	제해성	이영범
3.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B-30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어진동, KT&G세종타워B)
4. 전화번호	031-478-9600	044-417-9600
5. 지정 연월일	2014. 6. 23.	2023. 1. 2.

* 법인 변경(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건축공간연구원)

**[그림 1-1] 공공건축지원센터 변경 지정·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호,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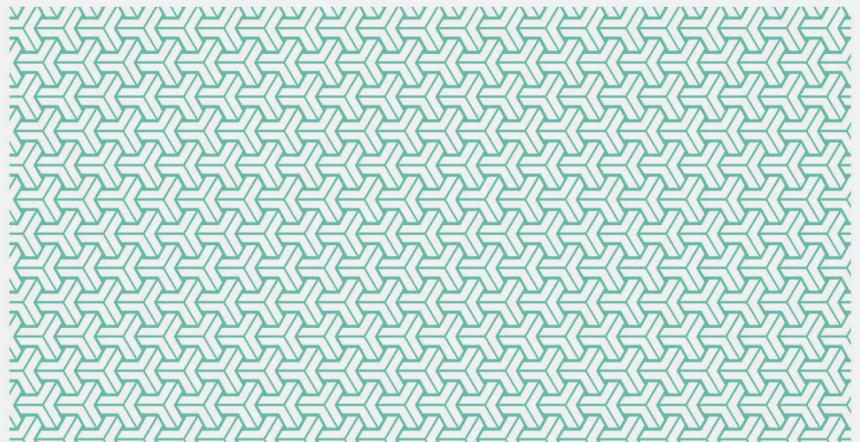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는 사전검토 업무,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과 관련한 업무 등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상에 차이는 없다.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서 국토부는 승인권자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서 개선조치 등에 대한 권고가 가능하다. 사전검토 및 자문에 대한 응답은 1차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승인 과정을 통해서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 인력은 5명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10명의 절반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3] 건축서비스법 내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5.15. 타법개정)
<p>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u>사전검토</u> 업무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u>제2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u>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21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p> <p>①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과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마련할 것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5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법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법 제24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 및 결과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2. 서울시 공공건축지원센터
3. 부산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직 구성

- 2024년 12월 말 기준, 특별시 또는 광역시 단위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총 2개소
 - 서울특별시는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의 공공건축1팀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 부산광역시는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의 공공건축지원팀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표 2-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의 조직 구성

구분	소속	조직구성	센터장 직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건축1팀	1팀 5명 (팀장1, 주무관4)	팀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건축정책과 공공건축지원팀	1팀 7명 (과장1, 팀장1, 주무관5)	과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인가순으로 작성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담당 업무

- 시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지원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한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업무 수행과 타 부서 요청 시 관계자 교육을 진행함. 단, 민간전문가는 센터가 설치된 조직 내 다른 팀에서 담당
 -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관계자 교육,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운영을 전담하여 수행하며, 공모를 통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함. 단, 공공건축심의는 센터와 상이한 별도 부서에서 담당

[표 2-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시 유형의 담당업무

구분	건축기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교육	심의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센터에서 담당, ◎: 센터에서 공모 시 제한적 운영, ○: 센터가 설치된 조직 내(다른 팀)에서 담당,

△: 별도 부서(센터와 상이)에서 담당, ※: 별도 조직에서 요청 시 검토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1)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 주요 업무

- **(건축기획)** 통상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건축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 (위탁용역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건축가 관리자’가 지정되어 추진
 - 위탁용역으로 발주하여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 풀을 활용하며, 건축기획 업무 가이드로 ‘건축기획의 기술’을 제작
- 본청 사업의 경우,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연간 2~10건 내외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 중
 - 기존에는 자치구 공공건축 사업도 건축기획 공모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예산 축소로 현재는 본청 사업만 해당되며, 최근 3년간 20건의 건축기획 업무를 진행(‘21년 10건, ‘22년 7건, ‘23년 3건)
 - ’24년(12월 기준)에는 2건의 건축기획 업무를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가 생략되며,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후 설계공모를 추진
-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 사전검토 업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인력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자문위원) 30명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133건의 사업 검토 수행
 - 24년 10월 기준, 총 30명(건축설계 및 계획 28명, 기타 분야 2명)의 외부 전문가가 사업계획 사전검토 외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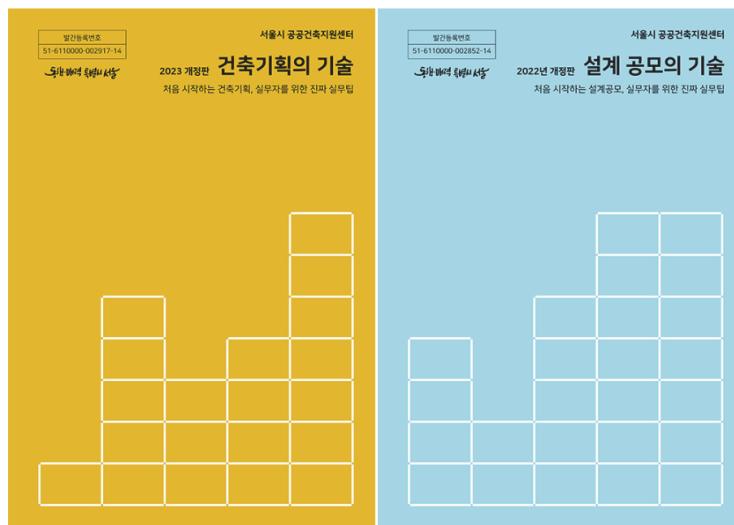
[표 2-3]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55	32	51	138
통지건수(건)	55	32	46	133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주로 서면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대면회의 및 사업부서와 유선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절차 이해를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작하여서 활용 중에 있음
- 건축기획의 기술 및 설계 공모의 기술을 제작 배포



[그림 2-1] 서울특별시 건축기획의 기술, 설계 공모의 기술

출처: 서울특별시 공모포털. <https://project.seoul.go.kr/view/viewDetailNews.do>

(검색일: 2024.12.1.)

-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나 서울시 본청 사업 계획 사전검토 예산부분은 사업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도시기반시설 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
- (공공건축심의) 사전검토 의견 조치결과를 확인한 후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심의를 진행한 후 결과를 통보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3.6월 개정) 및 『서울특별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22.7월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 서울특별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서울시 내부위원 3명(미래공간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과 건축, 도시분야 전문가 31명
- 위원 임기: 2년

『서울특별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 **(설계공모)** 심의의견 조치결과를 확인한 후 프로젝트 서울 게재 승인을 거쳐 디지털심사장을 제공함. 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설계공모를 직접 수행
 - 프로젝트서울 홈페이지(<https://project.seoul.go.kr/>)를 통해 설계공모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 외에도 기초 자치구의 사업 등도 홈페이지를 활용

서울특별시 뉴 나린 중경 보며 커피 한 잔~ 한강 다리 기제 인기들이 중 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ENG

PROJECT SEOUL.

ABOUT US COMPETITIONS ARCHIVING WEB3D* NEWS

WINNER



창운대역세권 공공용지 개발사업 지명설계공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WEB3D



COMPETITIONS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설계공모

2024-12-06 접수마감

신월3동 도시재생 엔커시설 건립

2025-01-09 접수마감

도산공원 복합건물(도서관-기념관-주차장) 건립 설계공모

2025-02-14 접수마감

민관동행사업(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기획제안 공모 -
대상지 2.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6 부지

2025-01-03 접수마감

민관동행사업(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기획제안 공모 -
대상지 1. 개봉동 공영주차장

2025-01-03 접수마감

민관동행사업(공모형 민간투자사업) 기획제안 공모 -
대상지 3.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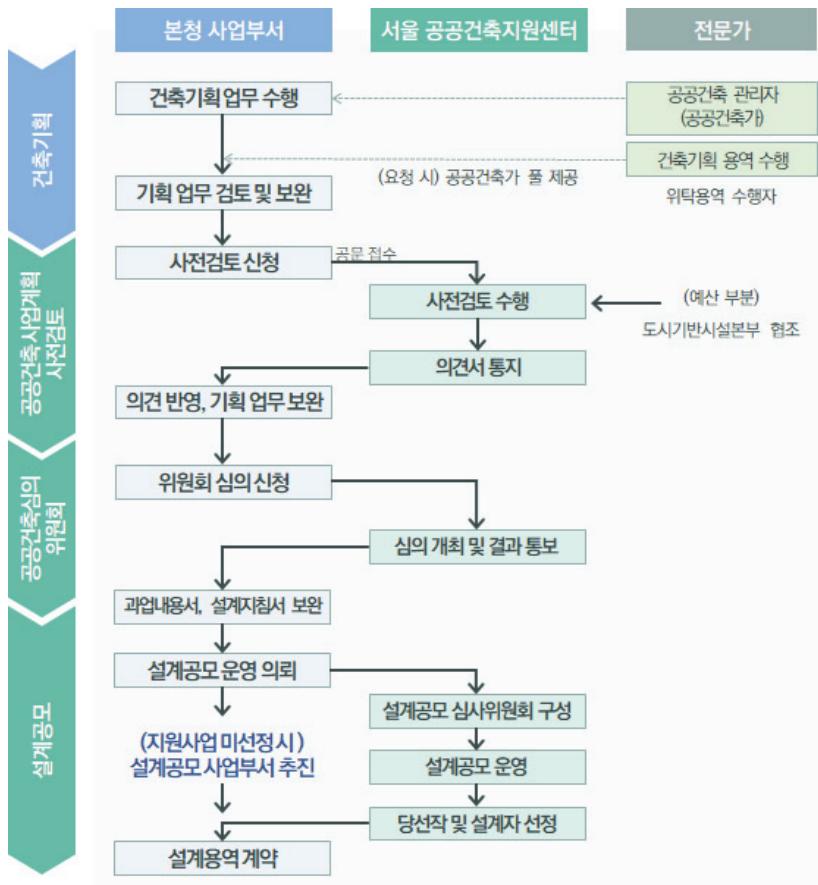
2025-01-03 접수마감



구로5동 청사 이전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제안공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그림 2-2] 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출처: 서울특별시 공모포털. 아카이브. <https://project.seoul.go.kr/main/viewMain.do>(검색일: 202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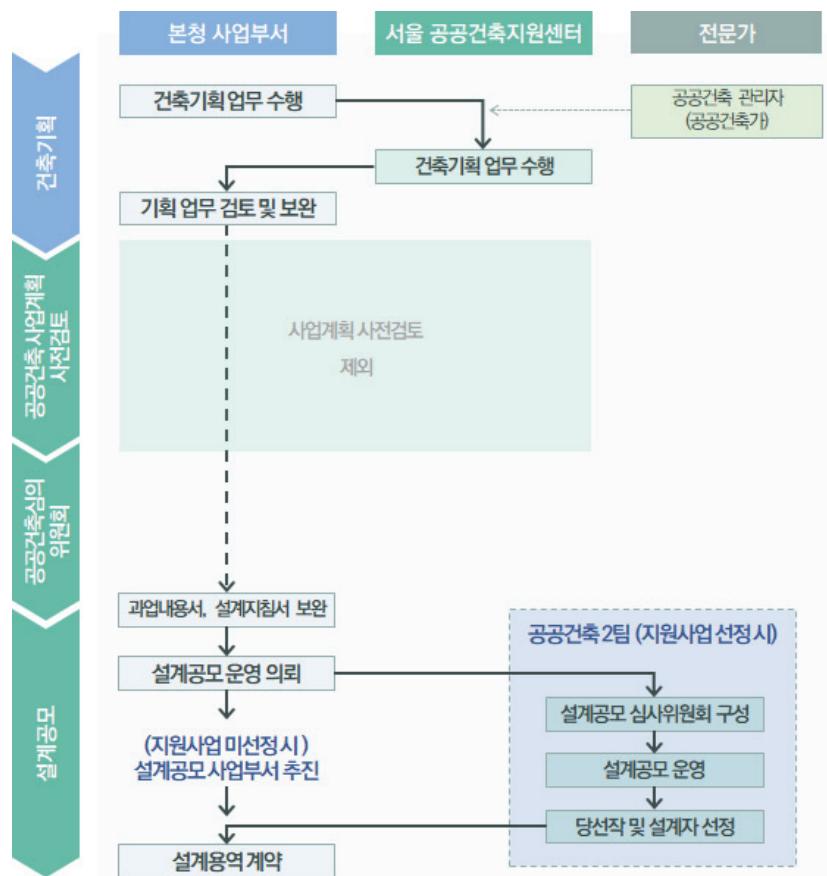
[그림 2-3]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추진 절차 – 사업부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

출처: 연구진 작성

□ 기타 업무

- **(자문에 대한 응답)**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제도 등 공공건축 분야 전반에 대하여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
 - 대면, 전화, 서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건수에 대한 별도 집계는 미수행
- **(관계자 교육)**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은 없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교육 요청시 연1회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
 - '22년 1회, 23년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4년 교육은 미실시

- (민간전문가) 공공건축2팀에서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기획 및 자문을 위한 252명의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기부채납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 조성 절차 준수도 공공건축 2팀에서 전담하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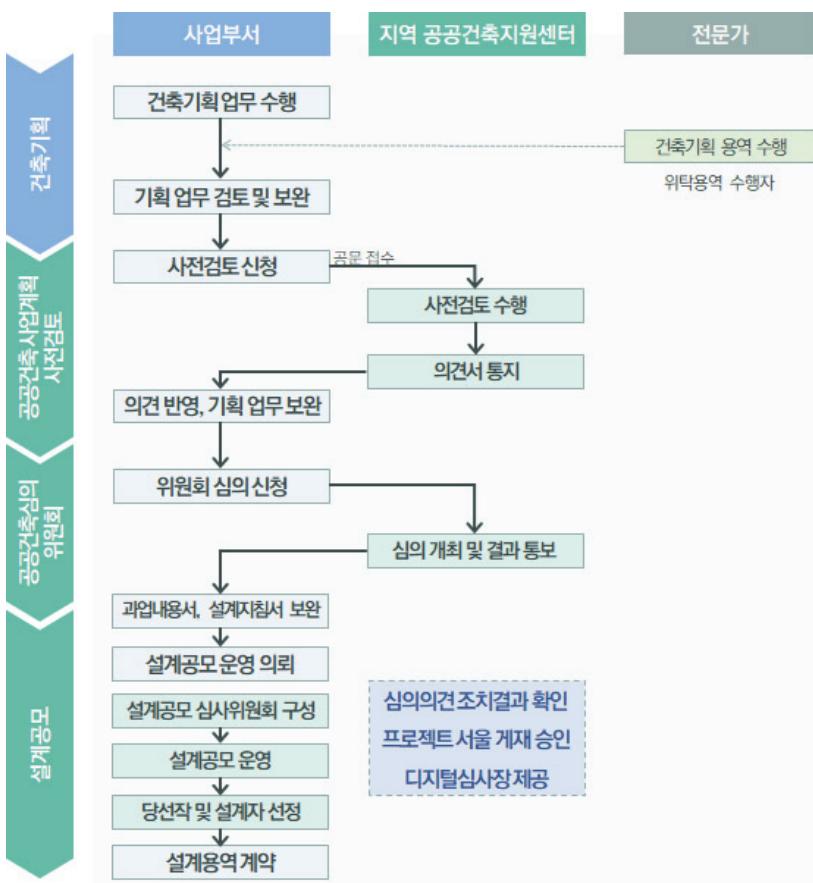


[그림 2-4]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 추진 절차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업무 수행
출처: 연구진 작성

2) 기초자치체(자치구) 사업

- (건축기획)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위탁 용역 발주에 어려울 경우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가 풀을 활용

-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건축기획 공모사업 선정에 자치구 사업을 포함시켰으나 예산 축소로 자치구 사업의 건축기획 공모는 현재 제외
 -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건축기획 업무 공모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공모 선정 시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제외
- (사업계획 사전검토)** 서울시 본청 사업의 사전검토 예산 부분은 도시 기반시설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수행하나 자치구 사업은 서울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모든 검토를 수행
- (공공건축심의)** 기본적으로 자치구 공공건축심의 담당부서에서 담당
- (설계공모)** 서울시 본청 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사업의 설계공모를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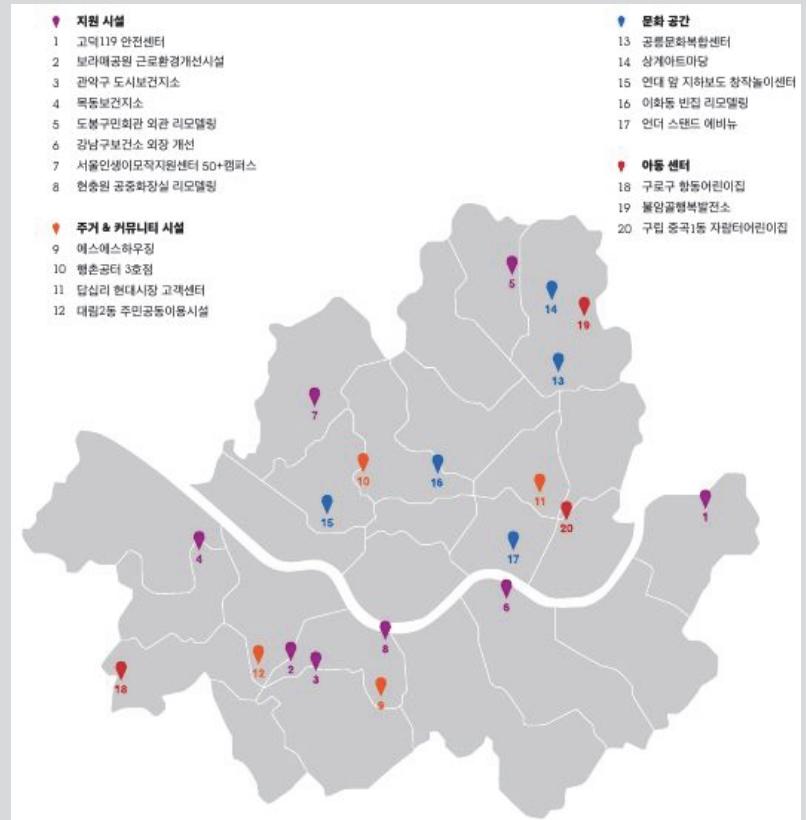


[그림 2-5]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운영(총 180명)*

- 광역: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177명
(24년 공공건축가 252명)
- 기초: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1명
- 주요 운영사항
 - 서울시는 광역 중심의 총괄 및 공공건축가를 운영
 -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시의 전반적인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조례를 통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총괄건축가 자문 등 규정)
 -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 및 설계에 참여하기도 함
(2012 21개 사업 참여 → 2016년 265개)



[그림 2-6] 서울시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젝트 주요 사례(2015~2016)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7934>(검색일: 2024. 11.27.)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공건축가 및 기타'의 경우 명칭 상 공공건축가 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결과임

3.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3)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 주요 업무

- **(건축기획)** 본청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위탁용역 포함)하며, 부서에서 용역발주로 인한 요청 시 민간전문가(자문위원회) 풀을 안내
 - 사업부서에서 요청시 공공건축가 풀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기획은 사업부서에서 설계기획은 용역으로 추진하도록 안내
-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모를 통해 연간 1~2건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 중
-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시,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 전담인력 2인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사 등 21명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최근 3년간 30건의 사업을 검토
 - 24년 12월 기준, 종합검토가 가능한 총 21명의 외부전문가가 사업계획 사전검토 외부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을 준수

[표 2-4]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27	22	35	84
통지건수(건)	26	20	33	79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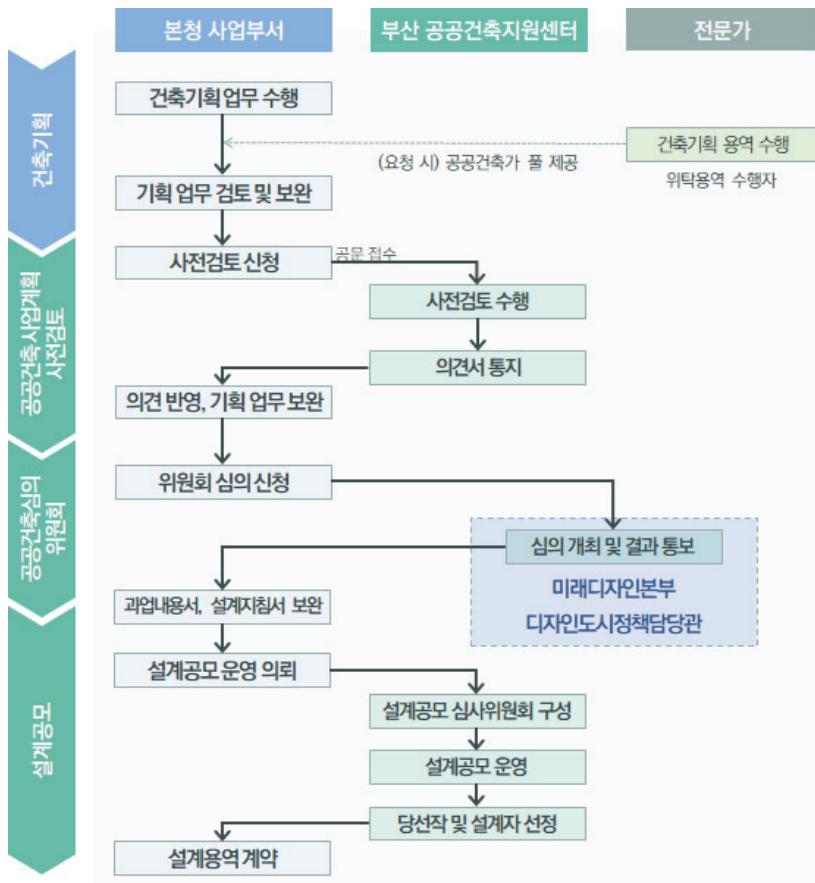
-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는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소속된 건축과가 아닌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에서 별도로 공공건축심의를 운영중
 -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설계 6인, 계획 2인 및 설비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년 47건을 시작으로 22년 29건, 23년 25건, 24년 17건을 수행
 - 공공건축심의는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기준으로 운영 중

- **(설계공모)** 설계공모는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운영하며,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
 - 센터는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making.busan.go.kr/main>)를 통해 설계공모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그림 2-7] 부산광역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출처: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포털 <https://making.busan.go.kr/main>(검색일: 202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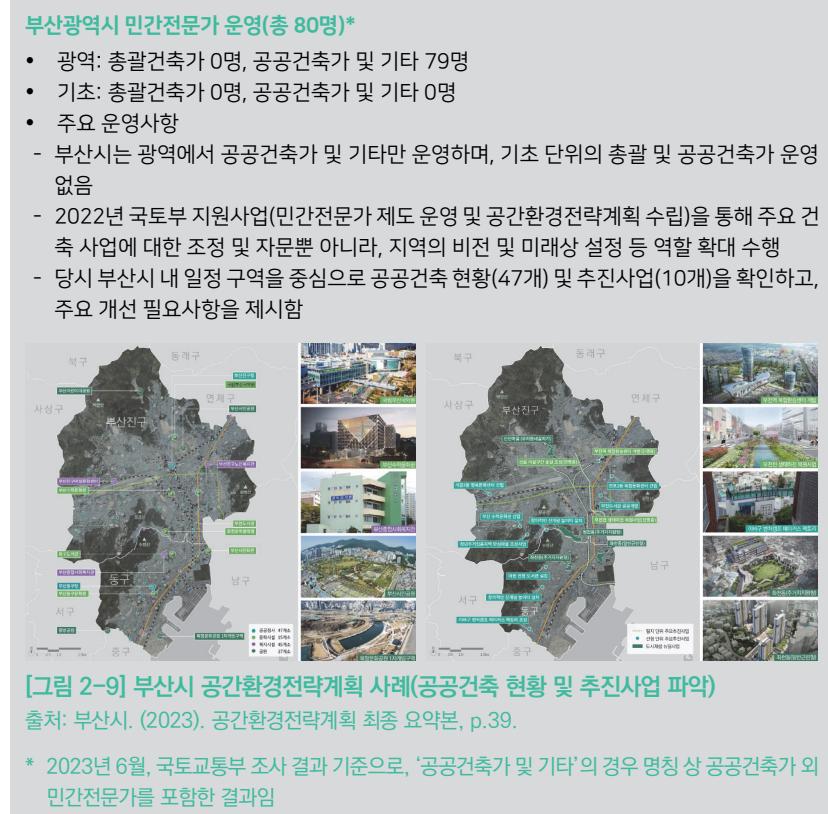
[그림 2-8] 부산광역시 본청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기타 업무

- **(자문에 대한 응답)**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제도 등 공공건축 분야 전반에 대하여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
 - 대면, 전화, 서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건수에 대한 별도 집계는 미수행하고 있으며, 공문으로 자문에 응답을 요청할 경우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답변
 - **(관계자 교육)** 24년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주최·주관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은 상반기에 1회 진행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 건축직렬 맞춤형 실무교육 교재 제작하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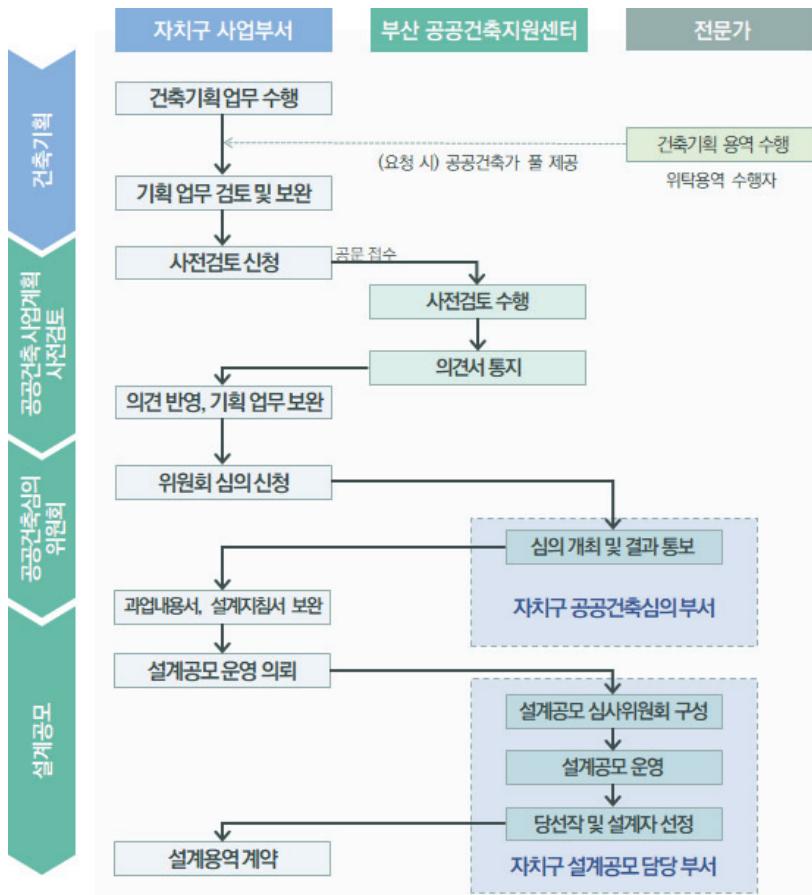
-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1인을 포함하여 공공건축가 79명이 활동 중이며, 건축기획 자문 및 용역수행 및 설계공모 운영·심사 등을 담당



4) 기초지자체(자치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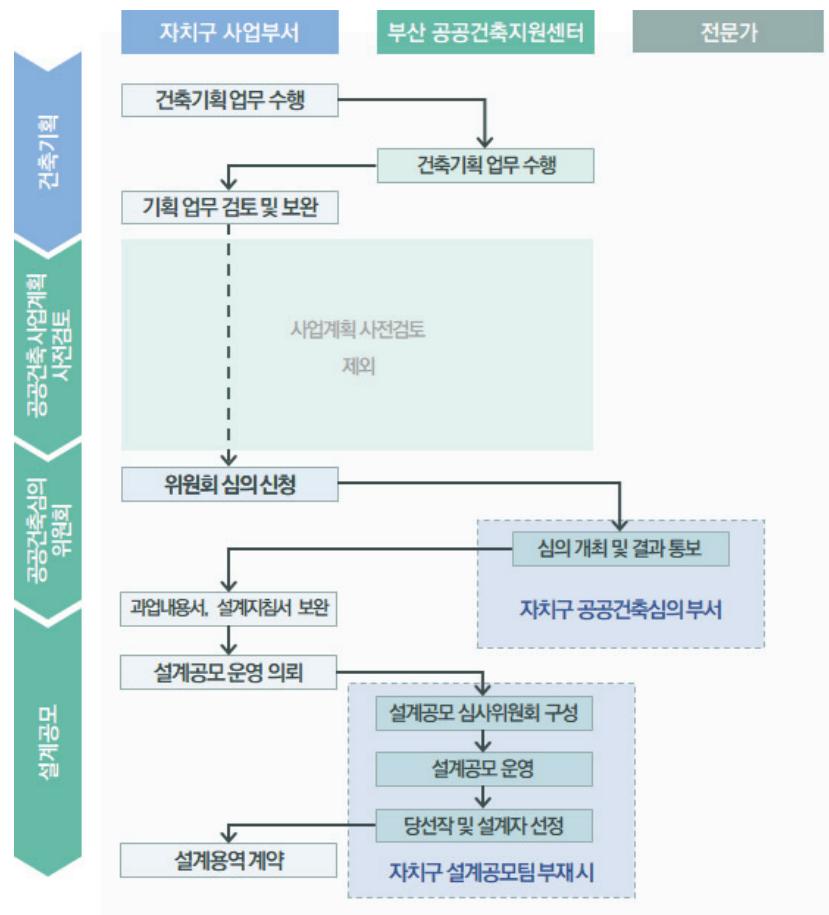
- (건축기획)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나 용역 발주 등으로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 시 민간전문가 풀을 제공
-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도 연간 1~2건의 건축기획 업무를 공모로 진행하고 있으나 본청이 아닌 자치구 사업으로만 한정하여 추진
 - '23년 2건, '24년 1건의 건축기획 업무를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
- (사업계획 사전검토) 본청 사업과 동일하게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모든 검토를 수행
- (공공건축심의) 기본적으로 자치구 공공건축심의 담당부서에서 담당

- (설계공모) 자치구에 설계공모 부서나 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요청 시 부산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행



[그림 2-10] 부산광역시 자치구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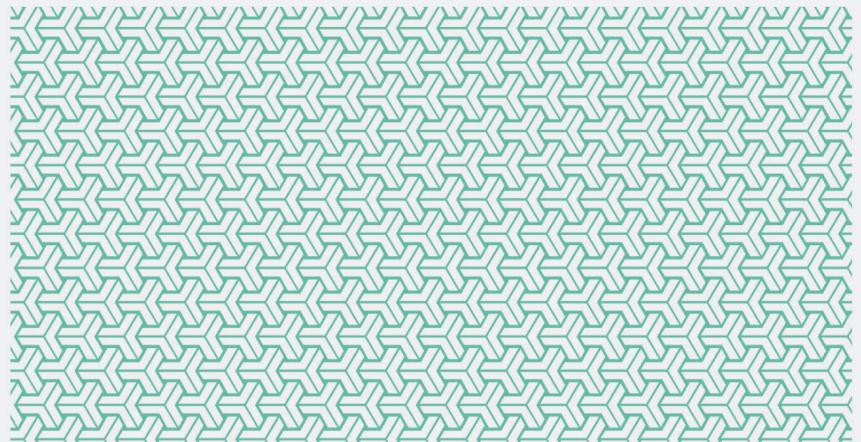


[그림 2-11] 부산광역시 자치구 사업 추진 절차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수행 및 자치구 설계공모 부서(팀)부재 시

출처: 연구진 작성

제3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 유형)



1. 도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2.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3.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4.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1. 도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조직 구성

- 2024년 11월 현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총 4개소
- 경상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본청¹⁾ 건축부서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지방출연연구기관인 (재)충남연구원의 공공디자인센터가 업무를 수탁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중
- 경기도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지역 공공 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운영

[표 3-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 유형의 조직 구성

구분	소속	조직구성
충청남도	(재)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1팀 5명
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1, 책임연구원2, 연구원2)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2팀 8명
공공건축지원센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센터장1, 팀장2, 과장3, 대리2)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1팀 3명
공공건축지원센터		(센터장 1, 파트장1, 주무관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1팀 5명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경관과	(팀장1, 주무관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인가순으로 작성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담당 업무

- 도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업무 수행
-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역할을 병행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정책연구 및 충청남도 및 산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인 지원, 디자인 역량강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

-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일부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 발주·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 업무를 병행하며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 경기도 및 산하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축·토목·조경·환경 조성 사업에 전반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소속 '공공건축기획파트'와 기능이 연계되어 있으며,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일부 결합하여 수행 중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와 협력하여 권역별(제주시 동부, 서부 및 서귀포시) 건축기획 업무를 자문·조정·지원하고 있으며, 본청 및 행정시, 지방공기업의 공공건축 사업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속한 건축경관과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와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수행 중

[표 3-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도 유형의 담당업무

구분	건축기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교육	심의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충청남도		●	●	●			
경기도	●	●	●	●			
경상남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센터에서 담당, ○: 센터가 설치된 조직(팀)에서 담당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포함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1)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현황

- 충청남도 및 산하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연간 60~70여 건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 중

[표 3-3]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82	68	72	222
통지건수(건)	71	62	64	197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충청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공건축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건축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으며(최근 3년 간 5건 수행), 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2) 충청남도 본청 발주 공공건축 사업의 절차

- (건축기획) 개별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 일부 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기획업무 지원
- (사전검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 건축분야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활용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지
- (설계공모) 개별 사업부서에서 설계공모 운영



[그림 3-1] 충청남도 발주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3) 충청남도 산하 시·군* 발주 사업

*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건축 사업

- (건축기획) 개별 시·군에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
 - (사전검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행

충청남도 민간전문가 운영(총 135명)*

- 광역: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71명
 - 기초: 총괄건축가 5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58명
 - 주요 운영사항
 - 충남도 총괄건축가는 도 단위 주요 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총괄·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
 - 광역 및 기초 총괄건축가간의 간협정·업무협의의 자리를 통해 주요 축진사업 및 협약 등 논의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공건축가 및 기타'의 경우 명칭 상 공공건축가 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결과임

3.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4) 경기도 본청 발주 사업



[그림 3-2] 경기도 발주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기획) 개별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 본청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및 수요조사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감독함
- (사전검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 건축, 도시, 구조, 조경 등 분야별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활용

[표 3-4]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35	80	110	225
통지건수(건)	35	80	108	223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지
- (설계공모) 개별 사업부서에서 설계공모 운영

5) 경기도 산하 시·군 발주 사업

- (건축기획 등) 개별 시·군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를 운영함
- (사전검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 건축, 도시, 구조, 조경 등 분야별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활용

경기도 민간전문가 운영(총 179명)

- 광역: 총괄건축가 0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0명
- 기초: 총괄건축가 12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167명
- 주요 운영사항
 - 경기도는 광역 차원에서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없음. 기초 단위에서만 운영함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공건축가 및 기타'의 경우 명칭 상 공공건축가 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결과임

4.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6) 경상남도 본청 발주 사업

- (건축기획) 개별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함
- (사전검토)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 건축, 구조, 시공, 조경, 기계 등 분야별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를 사전 검토 외부전문가로 활용함

[표 3-5]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12	55	80	147
통지건수(건)	11	55	77	143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주택과 업무로 수행
- (설계공모) 개별 사업부서에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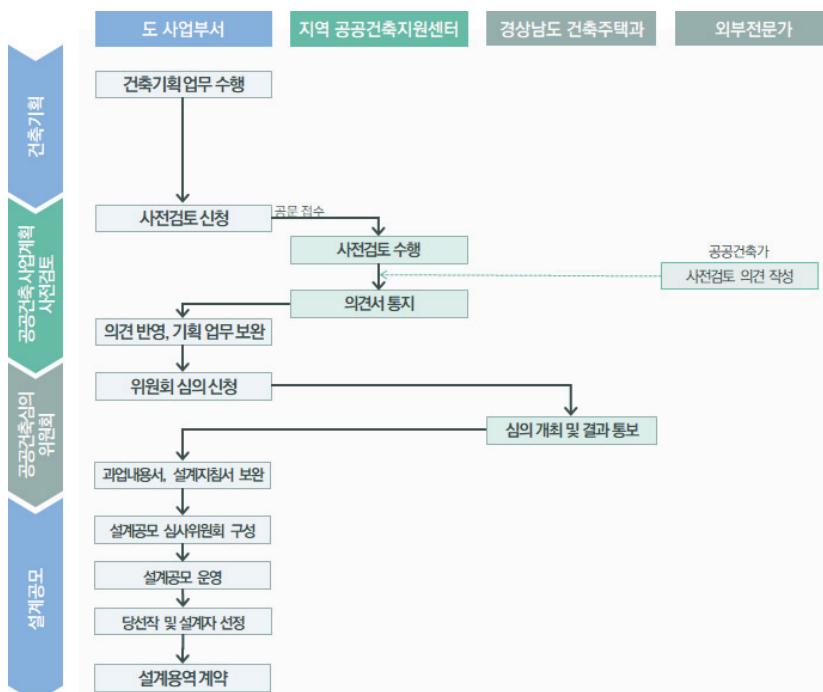
7) 경상남도 산하 시·군 발주 사업

- (건축기획 등) 개별 시·군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를 운영함
- (사전검토) 경상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함

경상남도 민간전문가 운영(총 196명)*

- 광역: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30명
- 기초: 총괄건축가 6명, 공공건축가 및 기타 159명
- 주요 운영사항
 - 경상남도는 광역 및 기초를 합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임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공건축가 및 기타'의 경우 명칭상 공공건축가 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결과임



[그림 3-3] 경상남도 발주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8)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행정시 발주 사업



[그림 3-4] 제주특별자치도 발주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기획) 개별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권역별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사업별 건축기획에 대한 자문·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
- (사전검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수행.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별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활용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2~2023년)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3	19	22
통지건수(건)	3	16	19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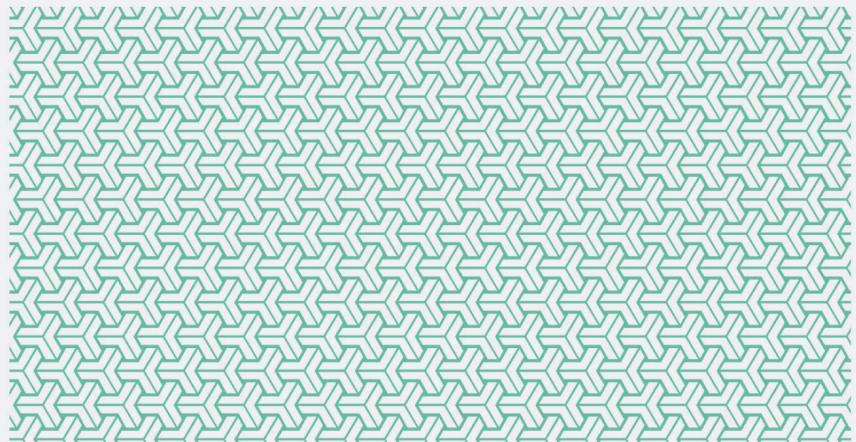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설계공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가 속한 건축경관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설계공모를 운영함



제4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



1. 교육청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3.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5.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6.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1. 교육청 유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조직 운영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대부분 교육청 '시설과' 부서에 설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조직(팀)은 주로 설계용역 공고 이전의 '기획'단계 업무를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조직(팀)은 기획부터 설계, 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포괄

[표 4-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조직 구성

구분	소속	조직구성	센터장 직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담당	1팀 5명(팀장 1, 주무관 4)	팀장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공공건축지원담당	1팀 6명(팀장 1, 주무관 5)	과장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	1팀 7명(팀장 1, 주무관 6)	과장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추진팀	1팀 7명(팀장 1, 주무관 6)	단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설계지원담당	1팀 4명(팀장 1, 주무관 3)	과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인가순으로 작성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업무로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와 자문에 대한 응답 업무를 수행
 - 교육청 유형 중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없으며, 일부 센터는 타 부서 요청에 따라 교육청 내부 건축직무 교육 등 교육과정의 일부 과목을 맡아 공공건축 제도 교육을 진행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일부 사업의 건축기획 업무를 대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센터 업무는 아니나, 5개 센터에서 모두 담당

- 설계공모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된 조직(과) 내 설계공모팀에서 교육청 사업의 설계공모 운영을 담당
- 「건축기본법」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미운영
- 「교육시설법」개정 이후, 교육청 유형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사전기획 적정성검토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센터에 따라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 검토사업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사업의 유형을 구분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검토 기관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교육시설법 법률 제18635호)

[표 4-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담당업무

구분	건축기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교육	공공심의*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서울특별시교육청	●	●	●	-	●	●	●
경기도교육청	-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
경상북도교육청	-	●	●	-	○	○	-

*공공심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미

**●: 센터에서 담당, ○: 센터가 설치된 조직(과)에서 담당, -: 미운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인가순으로 작성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공공건축 사업

- 교육청 사업은 공공건축 조성 절차의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²⁾와 '학교가 아닌 공공건축'으로 구분
 - 교육청 사업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교육(지원)청 청사, 도서관, 관사, 교육원, 유치원 등 사업은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기존의 공공건축 조성 절차를 이행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정의에 따른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그림 4-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다만, 학교는 「교육시설법」에 따라 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검토를 받아야 하고, 적정성검토를 받은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갈음



[그림 4-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학교 사업 추진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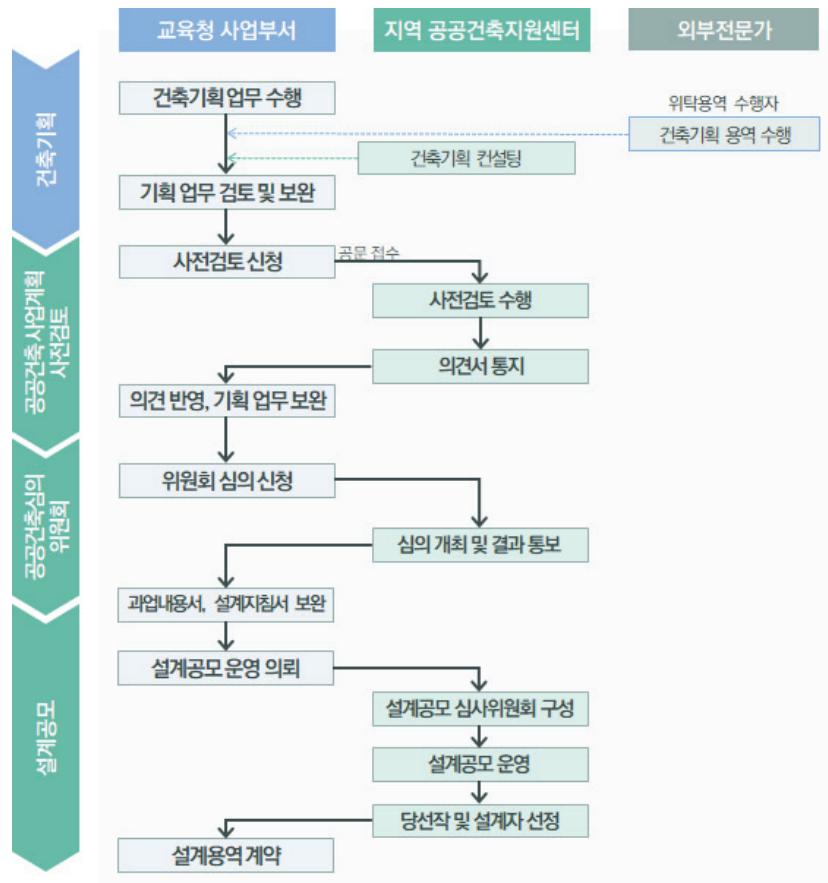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³⁾

1)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일반) - 사업부서 건축기획 수행

- (건축기획)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진행
 - 교육지원청은 건축기획 다수 수행 경험이 있어 자체적으로 건축기획 용역 발주를 진행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부서 요청 시 건축기획 업무 컨설팅을 진행하여, 공공건축 사업 행정절차 안내, 유사사례 공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지원

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2024.8.14.) 결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림 4-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일반)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전검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년 3월에 설치되어, 최근 3년간 120건의 사업을 검토·의견서 통지

[표 4-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39	49	40	128
통지건수(건)	35	48	37	120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 절정성검토 수행건수 포함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부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

- 사전검토 전담인력 4명이 사전검토 업무를 진행. 사전검토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하였으나, 현재 사전검토 의견 작성에 활용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주로 서면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와 유선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음
- 사업부서의 신청서 작성 안내를 위해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22.11)을 제작·배포
- (심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로 구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3.6월 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22.7월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은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교육청 내부위원 2명(본청 1명, 교육지원청 1명)과 건축분야 전문가 8명
- 위원 임기: 2년('24.04.01~'26.03.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 사업부서는 사전검토를 통지받은 이후, 의견서를 토대로 과업내용서, (공모지침서) 등의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1억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 이후 센터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됨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134개 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였으며, 교육청 사업특성상 사립학교에 대한 심의도 진행됨

[표 4-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수(2021~2023년)(단위: 건)

신청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교육청(본청)	10	4	1	15
직속기관	1	0	1	2
교육지원청	27	30	29	86
사립학교	4	16	11	31
합계	42	50	42	134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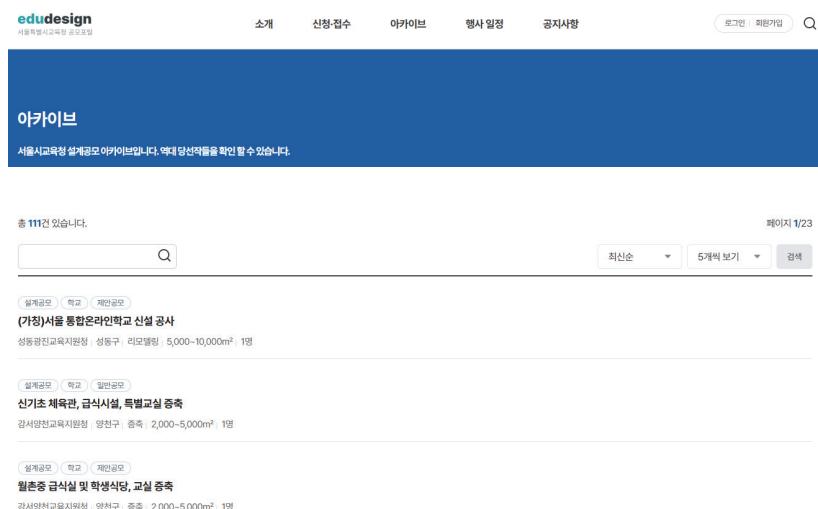
- (설계공모)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교육청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운영을 지원
 - 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23년 개정)에 따라 운영하며, 공모지침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사업부서에 배포
 - 설계공모는 센터와 사업부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센터에서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 구성, 공모안 기술검토, 설계공모 공고·심사결과 발표 등 업무를 수행, 사업부서에서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 접수 등을 진행



[그림 4-4]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절차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운영 매뉴얼. p.1

- 센터는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edu-design.sen.go.kr>)를 통해 설계 공모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



[그림 4-5]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포털. 아카이브. <https://edu-design.sen.go.kr/archives?page=1&sort=desc&pageSize=5> (검색일: 2024.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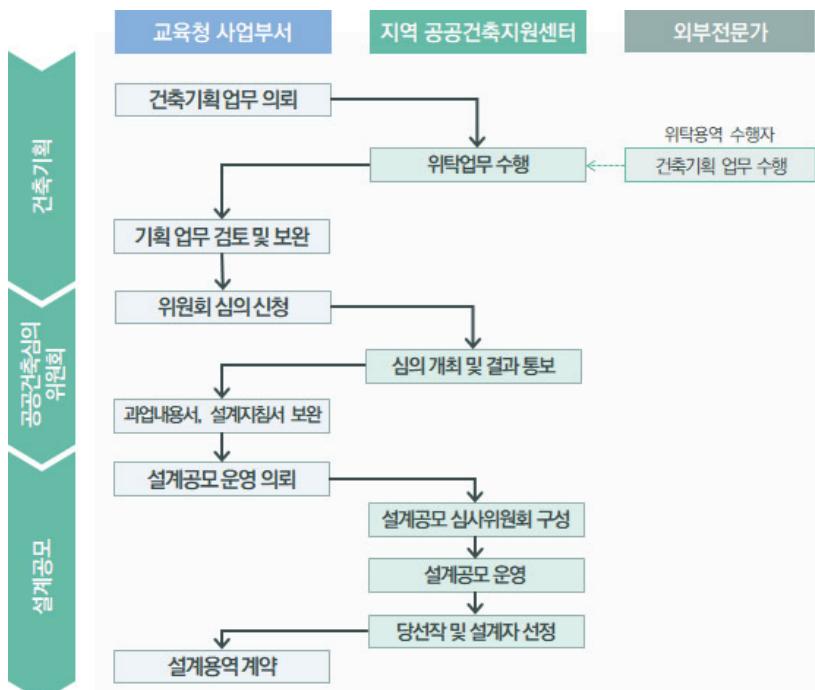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최근 3년간 56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주로 교육지원청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

[표 4-5]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공모 운영건수(2021~2023년)(단위: 건)

신청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교육청(본청)	0	0	0	0
직속기관	1	0	1	2
교육지원청	13	10	19	42
사립학교	0	3	9	12
합계	14	13	29	56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대행



[그림 4-6]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건축기획 업무 센터 위탁)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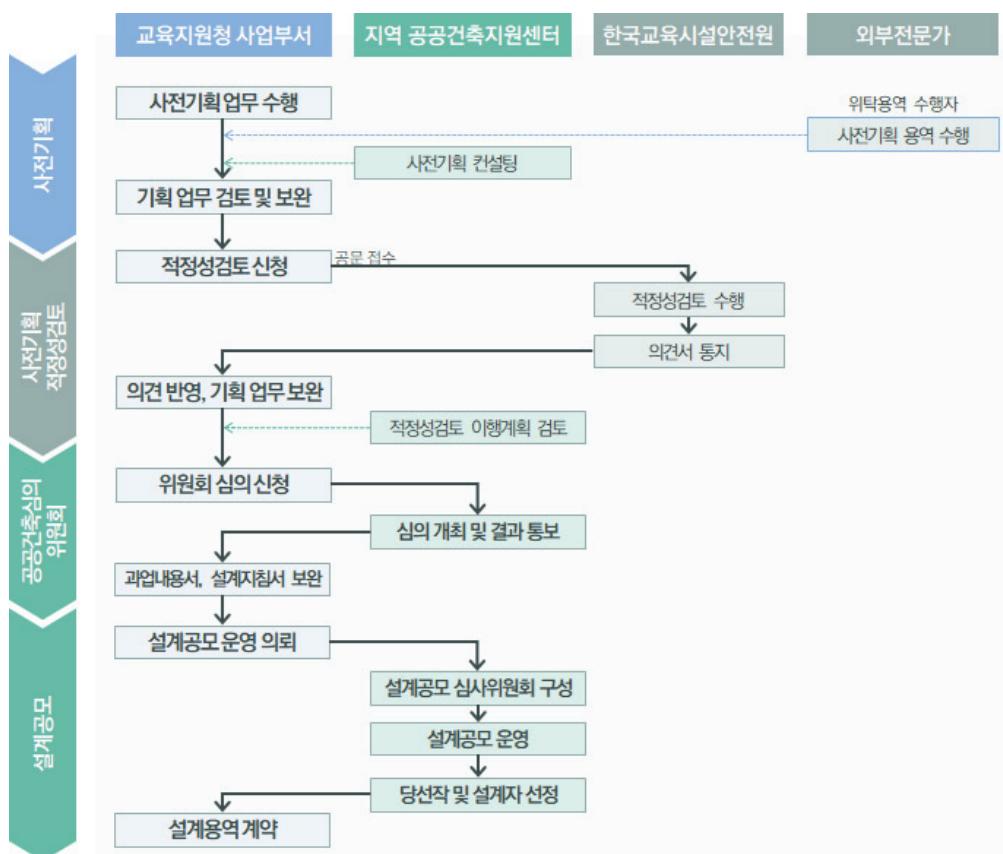
- (건축기획)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일부 건축직 공무원이 없는 직속기관 또는 본청 사업부서 대상으로 기획 업무 위탁수행

- 센터는 건축기획 용역 발주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3년간 19건의 건축기획을 진행(‘21년 15건, ’22년 2건, ’23년 2건)
- 공모 방식이 아닌 수시지원 형태로 운영
- 건축기획 용역 수행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꿈담건축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선정
- (심의)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가 생략되며, 사업부서는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 (설계공모)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부서는 센터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면 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 교육청 학교 사업(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제외)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 지원센터 적정성검토 수행
 - 학교시설 사업은 ’21년 「교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사전기획(건축기획+교육기획)을 수행하고, 전문기관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검토를 받아야 함
 - (적정성검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검토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제출자료(사전기획 보고서 등)의 차이가 있으나 사전검토 동일한 절차로 진행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수행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 적정성검토 수행
 - (사전기획) 사업부서에서 사전기획 업무를 진행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부서 요청 시 사전기획 컨설팅 업무 수행
 - (적정성검토) 사업부서는 사전기획 자료를 준비하여,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적정성검토를 요청
 - 적정성검토 통지 이후 사업부서는 검토결과를 사전기획에 반영하고 적정성검토 이행계획을 수립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부서의 적정성검토 이행계획을 검토 등 업무를 지원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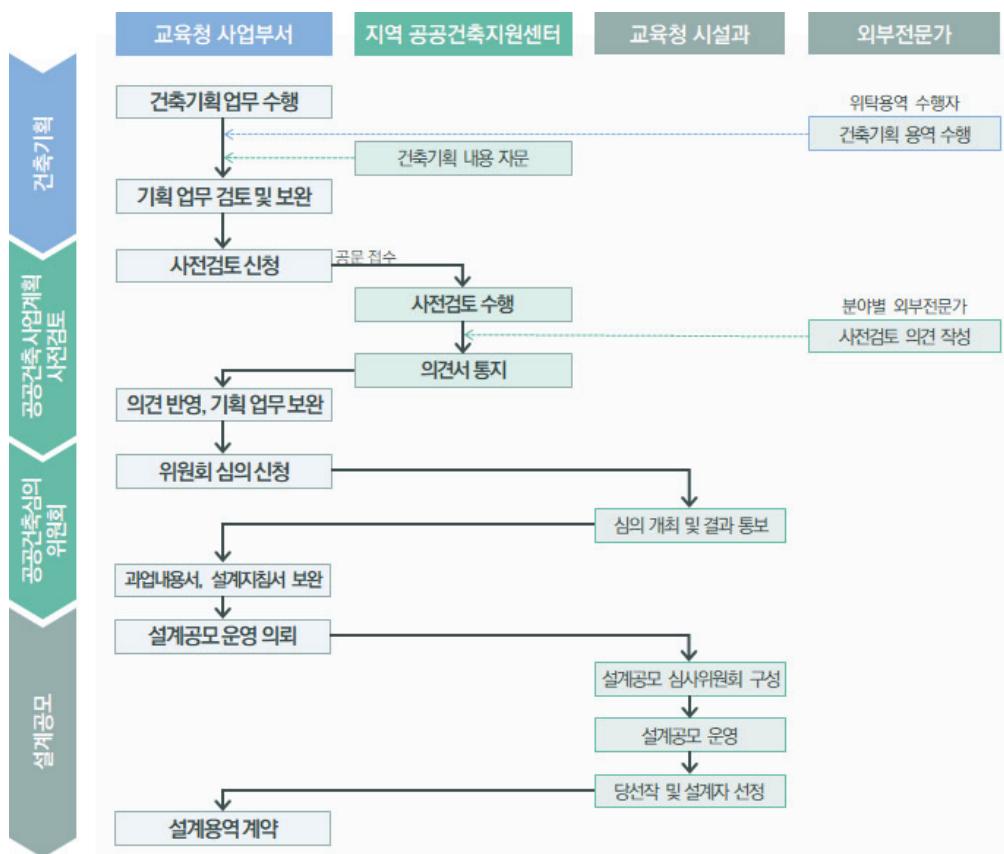
[그림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 추진 절차(한국교육시설안전원 검토대상)

출처: 연구진 작성

3.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⁴⁾

3) 경기도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그림 4-8]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일반)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기획)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부서에서 건축 기획 업무를 진행하며,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일부 사업의 기획 내용 자문을 수행

4)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2024.8.13.) 결과, 국가 및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 유·초·중·고·특수·청사 사업 예산편성 이후 건축(사전)기획 이행토록 안내하고 있으나, 기획 업무 적정시기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
- (사전검토)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년 10월에 설치인가를 받고 '21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하여, 최근 3년간 239건의 사업을 검토

[표 4-6]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통지건수(건)	116	49	74	239

* 적정성검토 수행건수 포함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교육청 사업부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
- 사전검토 전담인력 3명과 사전검토 자문위원회(건축사) 10명이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사업은 사업부서 담당자와 대면회의 및 현장방문을 토대로 서면검토를 진행
- ※ 사전검토 자문위원회는 공모방식으로 모집
- 센터는 『경기도교육청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등 가이드 제시하고, 교육청 공무원 또는 건축사 대상 교육 시 센터 담당자가 강의 진행
- (심의)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20.4월 개시), 위원회 구성·운영은 시설과 공공건축지원담당(팀)의 업무로 구분
 - ※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은 시설과 공공건축지원담당(팀) 소속
 - 경기도교육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
 -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모두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수행하며, 서면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다수결로 의결방법 결정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교육청 내부위원 5명(건축5급), 건축분야 전문가 22명, 조경분야 전문가 1명
- 위원 임기: 2년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심의위원 구성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1명
- 개최시기 : 월 2회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 센터는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매뉴얼』을 발간하여, 신청서류와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등 가이드를 제시

[그림 4-9]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업유형별 신청서류 목록

출처: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센터. (2024).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매뉴얼. 경기도 교육청. p.2

- **(설계공모)**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설계공모담당(팀)에서 교육청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업무를 수행

※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은 시설과 공공건축지원담당(팀)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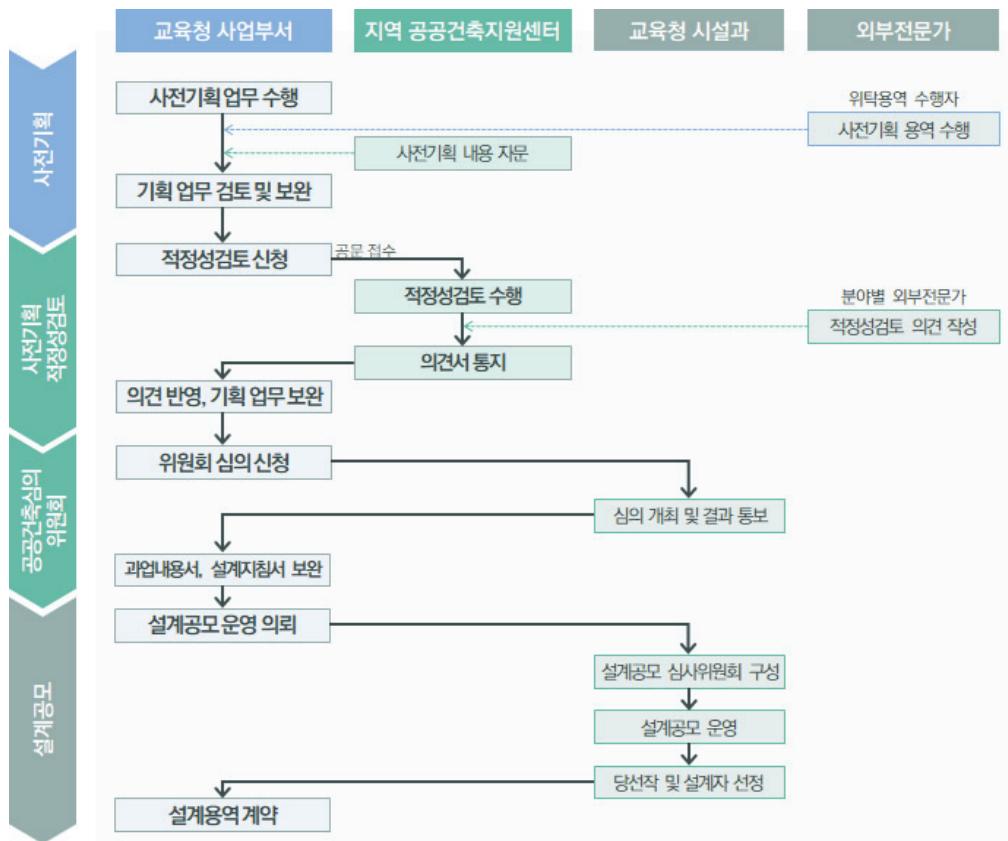
- 설계공모팀은 최근 3년간 일반설계공모 101건, 제안공모 154건 공모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약 3건의 공모가 진행
-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심사장 설치,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개발 등 설계공모 디지털 심사·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

[그림 4-10]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출처: 경기도교육청. 메인화면. <https://plan.goe.go.kr/index.do#>(검색일: 2024.12.1.)

4) 경기도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 교육청 학교 사업



[그림 4-11]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학교)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전기획)** 주로 소규모 증축사업은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사전기획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신축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은 사전기획 용역을 발주
- **(적정성검토)**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와 적정성 검토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교육청 일반 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사용자 의견 반영 여부 및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사업부서 담당자, 학교(사용자), 사전기획 용역 수행자 등 사업 관련주체와 대면회 및 현장방문을 토대로 적정성검토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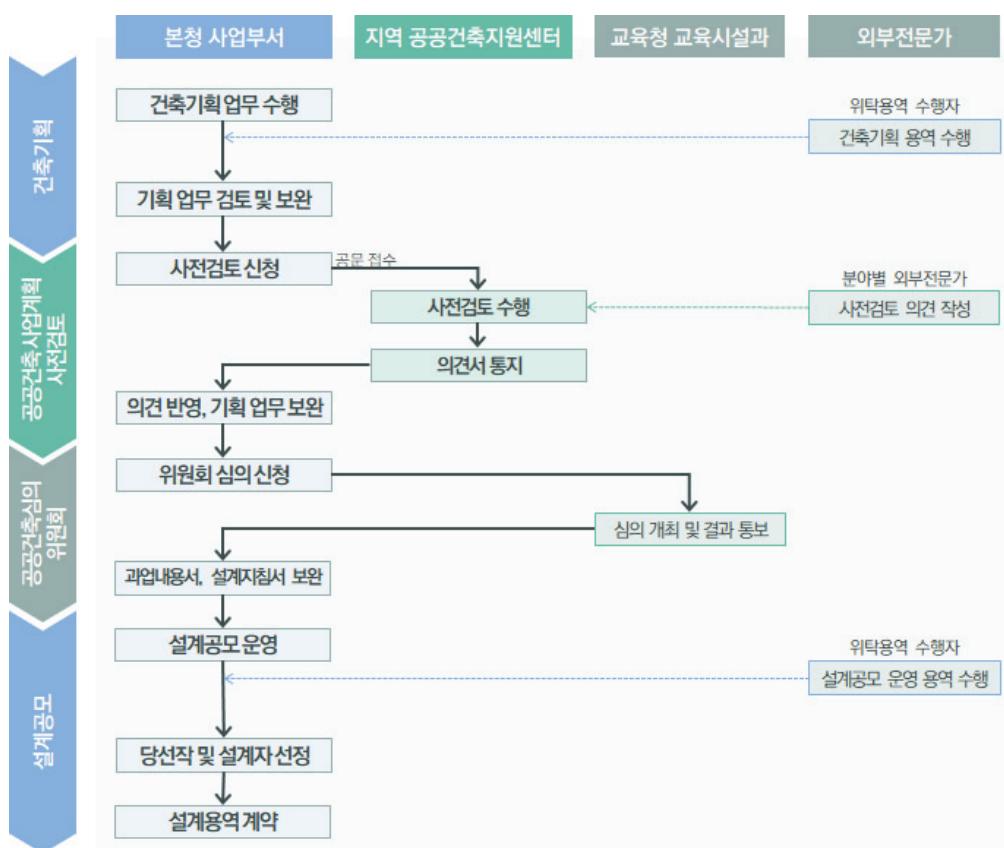
※ 사립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 (심의, 설계공모) 교육청 일반 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5)

5)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 본청 공공건축 사업



[그림 4-12]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본청)

출처: 연구진 작성

5)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2024.8.12.) 결과, 국가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 (건축기획) 교육청(본청)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 진행하며, 사업부서 요청 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기획 관련 자문 수행
- (사전검토)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센터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며, '21년 6월에 설치되어 최근 3년간 25건의 사업을 검토
 -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부서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
 - 학교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며, '23년부터 학교 시설은 모두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안내
 - 사전검토 전담인력 7명이 외부자문단 7명과 함께 사전검토를 주로 서면으로 수행하며, 필요 시 대면회의(협의회)를 추진

[표 4-7]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1~202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통지건수(건)	9	16	0	25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심의)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본청 사업에 한하여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
 -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교육시설과 소속
 - 위원회는 내부 기준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건축분야 14명, 도시분야 1명, 조경분야 3명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2024.11.29. 기준)

- 최근 3년간 본청에서 개최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상정건수 10건

[표 4-8]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수(2021~2023년)(단위: 건)

신청기관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교육청(본청)	4	3	3	10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설계공모) 교육청(본청)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며, 설계공모 운영 전문 기관에 위탁 수행

□ 교육지원청 공공건축 사업



[그림 4-13]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교육지원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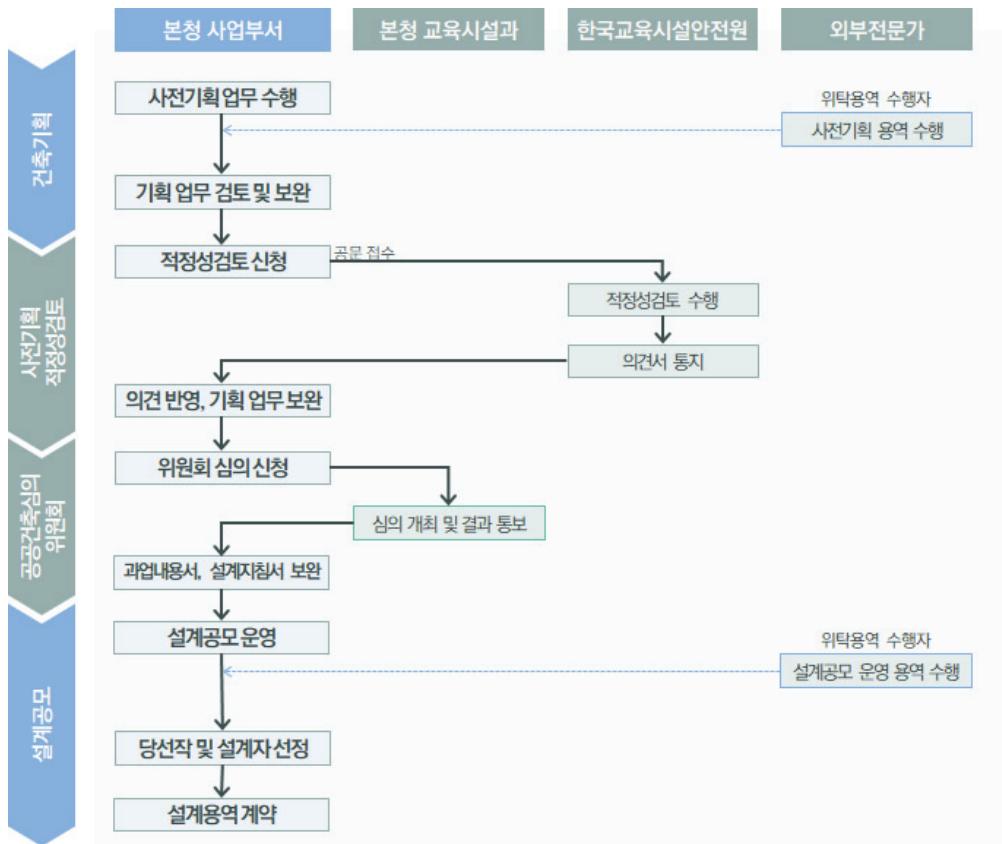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기획)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진행하며, 본청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부서 요청 시 기획 업무에 대한 자문 수행
- (사전검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신청
- (심의) 다른 교육청은 본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전담하는 것과 달리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소속기관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을 활용하도록 명단을 제공

- (설계공모) 본청 사업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 설계공모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

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 본청 학교 사업 – 본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그림 4-1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추진 절차(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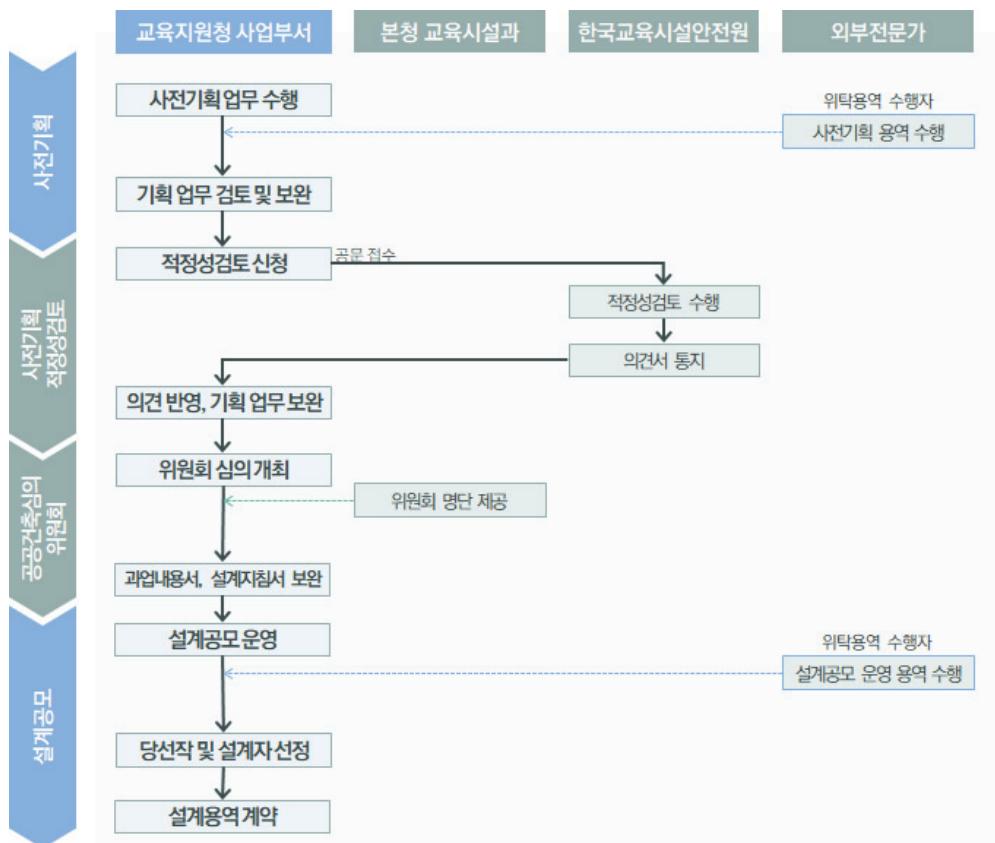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전기획) 교육청(본청) 사업부서에서 사전기획 업무 수행. 대부분 사전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 (적정성검토) 사업부서는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적정성검토를 신청

- '23년 10개교 사업에 대한 적정성검토 의뢰

- (심의) 교육청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본청 사업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설계공모) 교육청(본청) 사업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설계공모 위탁

□ 교육지원청 학교 사업 – 교육지원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운영



[그림 4-1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추진 절차(교육지원청)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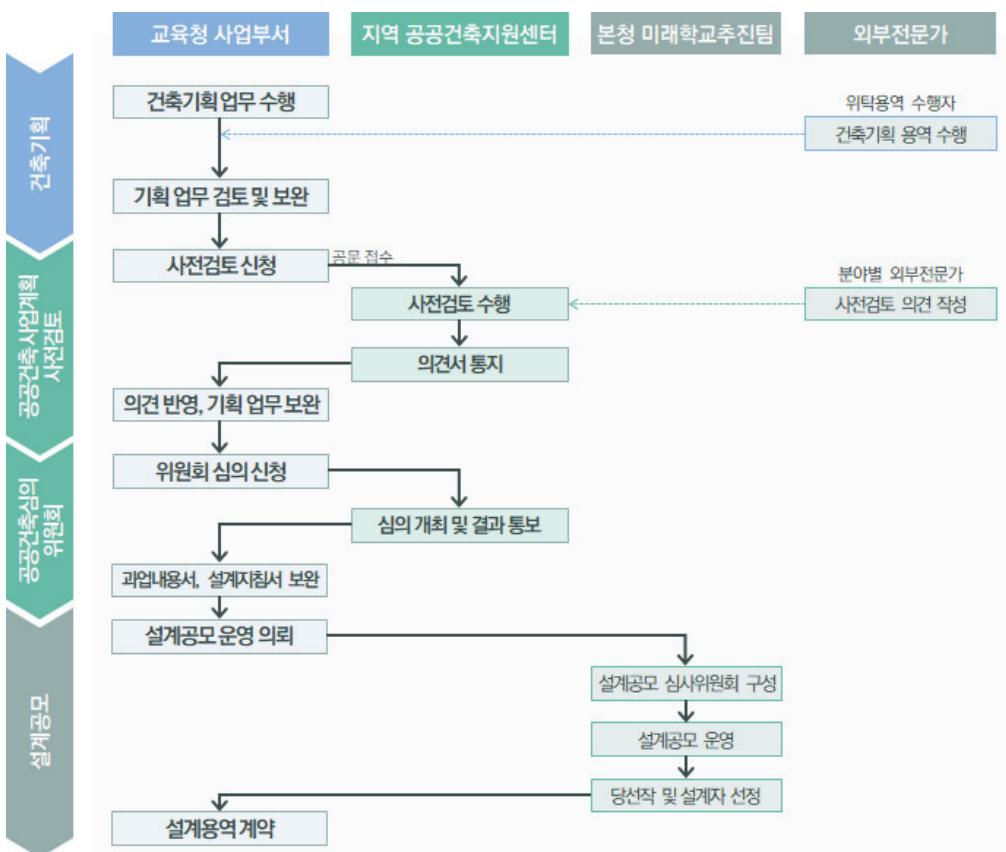
- (사전기획)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 사전기획 업무 수행. 대부분 사전 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 (적정성검토) 본청 학교 사업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 사업부서는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적정성검토를 의뢰

- (심의) 교육청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교육지원청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 (설계공모)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설계공모 위탁

5.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⑥

7) 충청남도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그림 4-16]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추진 절차(일반)

출처: 연구진 작성

6)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2024.11.28.) 결과, 국가 및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 (건축기획)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
- (사전검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2년 6월에 설치되어, 최근 2년간 23건의 사업을 검토·의견서 통지
 - 충청남도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부서는 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 검토를 신청

[표 4-9]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2~2023년)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5	19	24
통지건수(건)	4	19	23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 적정성검토 수행건수 포함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사전검토 외부민간자문단은 공모를 통해 건축분야 10명(건축사), 교육분야 3명(교감, 교수)을 위촉하여, 사업마다 1명씩 순차 배정하여 검토업무를 수행
- ※ 교육분야 전문가는 적정성검토 사업에 참여
 - 센터 담당자는 외부민간자문단에 사전검토 신청자료 제공 및 3자간(센터 – 자문단 – 사업부서) 업무협의 추진 역할
- (심의)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로 구분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 자문·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변경』('24)에 따라 운영되며, 다른 교육청과 달리 심의위원회에 교육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사전기획 대상]

- 외부위원 15명(건축계획 관련 전문가 6명, 충남도내 건축사 9명) + 내부위원 6명(기술직 공무원 3명, 교육분야 장학사 3명)
- 7명씩 3개조로 운영(건축계획 관련 전문가 2명, 건축사 3명, 기술직 공무원 1명, 장학사 1명)

[건축기획 대상]

- 외부위원 15명(사전기획 대상과 동일) + 내부위원 6명(기술직 공무원 6명)
- 7명씩 3개조로 운영(건축계획 관련 전문가 2명, 건축사 3명, 기술직 공무원 2명)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1억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내용 적정성에 관한 심의로 구분
-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2년 42건(21회), '23년 31건(19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 (설계공모)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기획팀에서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의 설계공모를 전담
 - ※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은 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추진팀 소속
 - 사업부서에서 설계공모 운영을 의뢰하면, 설계공모 담당자는 『충청남도 교육청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공무원, 대학교수, 건축사 3개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모집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인력풀 구성(공무원 25명, 대학교수 75명, 건축사 136명)
- 위원 임기: 3년('23.09.01~'26.08.31.)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 구성: 7명(대학교수 3명, 건축사 3명, 공무원 1명) + 예비위원 3명(분야별 1명)
- 심사위원 선정 절차
 - : 심사위원 인력풀 236명 중 무작위 방식으로 3개 분야별 전문가 5배수 인원으로 3개안 추출 → 3개안 중 1개안을 추첨 확정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내부자료)

- 충청남도교육청은 신축 사업은 일반설계공모,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공모를 진행하며, 사업에 따라 일부 신축 사업은 제안공모로 추진

[표 4-10]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 유형별 운영건수(2022~2024년)(단위: 건)

공모유형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일반설계공모	5	4	4	13
제안공모	23	19	19	61
합계	28	23	23	74

*2024년은 11월까지 운영건수를 의미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는 교육지원청 신청 사업이 다수를 차지

[표 4-11]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 신청기관별 운영건수(2022~2024년)(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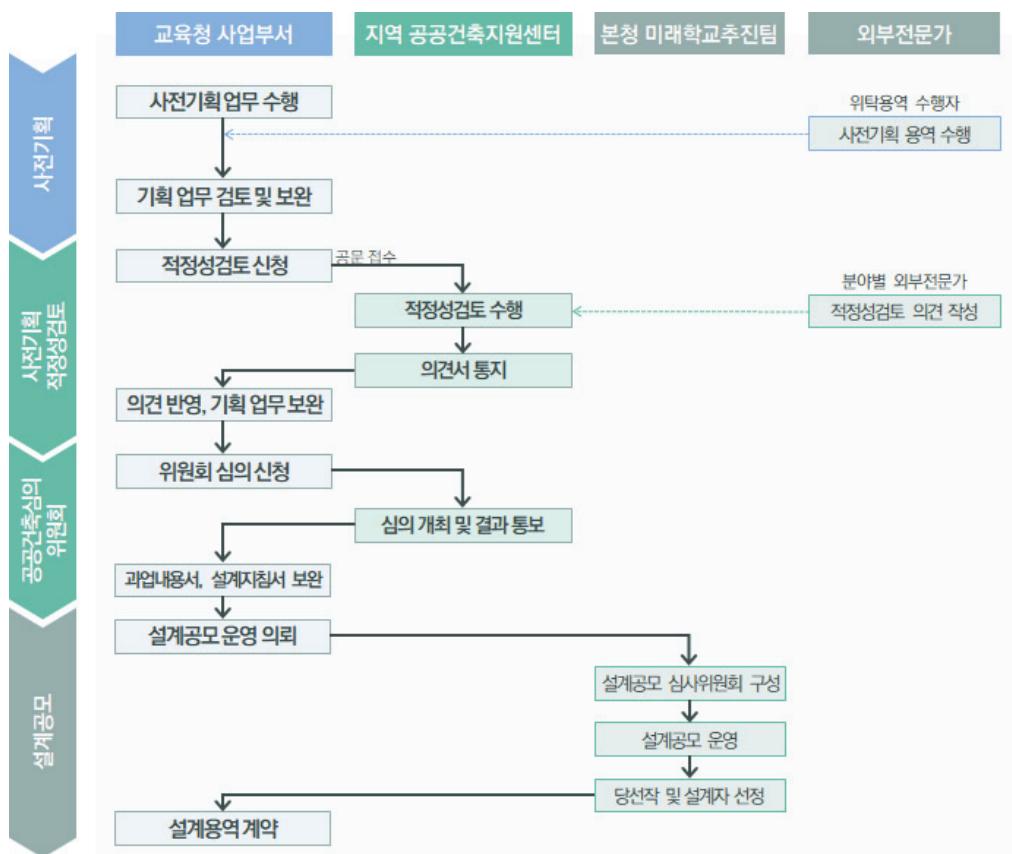
신청기관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교육청(본청)	4	4	3	11
교육지원청	24	19	20	63
합계	28	23	23	74

*2024년은 11월까지 운영건수를 의미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 교육청 학교 사업(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제외) –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 지원센터 적정성검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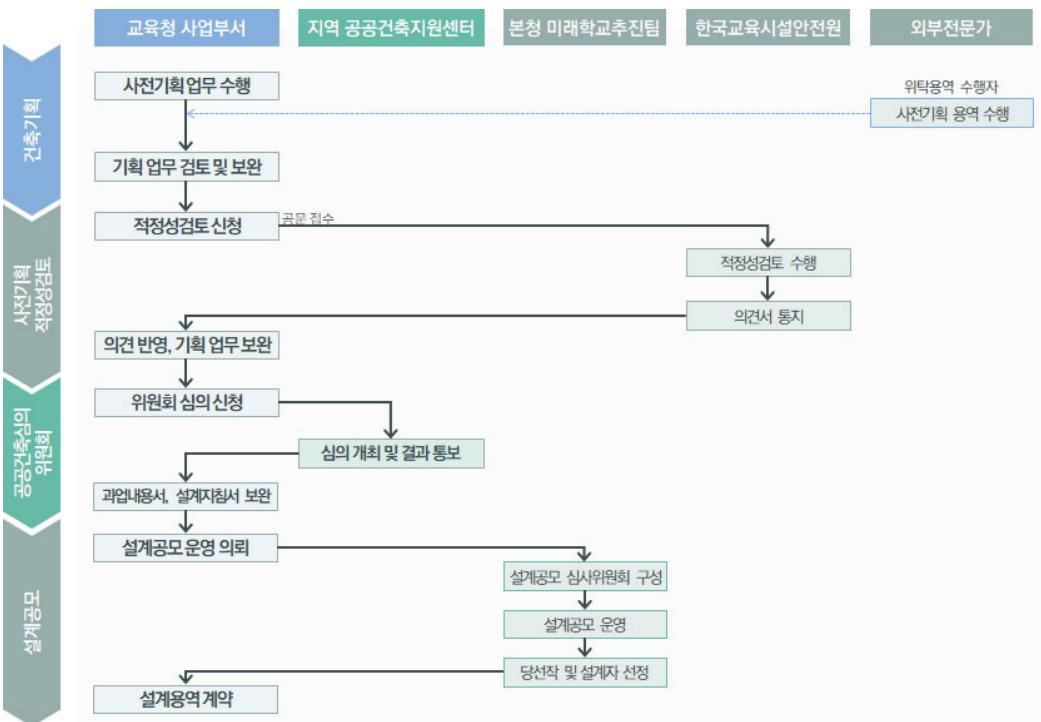


[그림 4-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조성절차(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제외)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전기획) 사업부서에서 사전기획 업무 수행
- (적정성검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제외한 학교시설은 충청남도 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적정성검토 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되며, 적정성검토의 세부 절차는 사전검토 절차와 동일
 - '24년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업 15건 중 8건이 적정성검토 대상
- (심의, 설계공모)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일반)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 적정성검토 수행



[그림 4-1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조성절차(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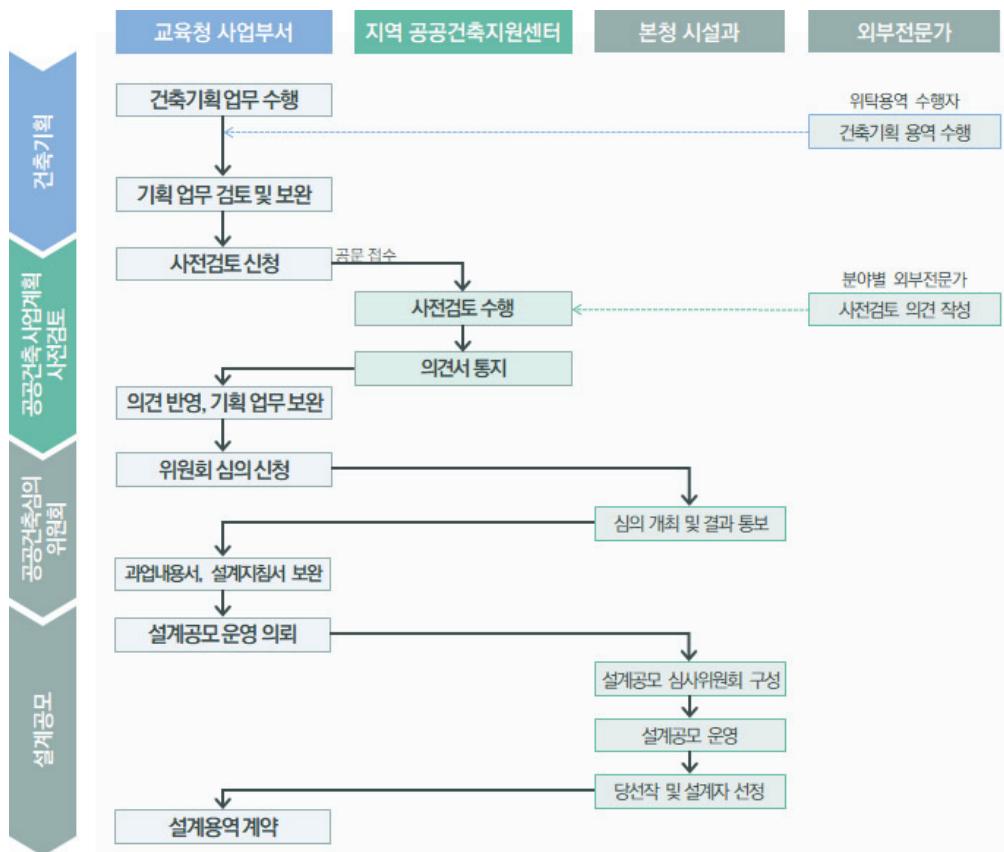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전기획) 사업부서에서 사전기획 업무 수행
- (적정성검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적정성검토를 요청
- (심의, 설계공모)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 사업(학교 포함)과 절차 동일

6.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7)

9) 경상북도교육청 사업(학교 제외)

□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



[그림 4-19]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 조성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기획) 사업부서에서 건축기획 업무 수행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건축기획을 예산편성(재정투자심사 등) 전에 수행하도록 안내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예산편성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7)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2024.11.21.) 결과, 국가 및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토대로 작성

구분	주요업무	소요기간	세부업무	해당(협조)부서	비고
기획 단계 (14주)	사업계획수립	2개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검토(유치원 설립 등) 교육환경 평가(유치원 설립 등) 사업계획서 작성 현장 배치계획	사업부서 (지역교육청 포함)	(약정)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획용역비 반영
	기획용역	7개월	기획용역(사업기획 2개월, 건축기획 4개월) 사업기획 내용 및 사업비 사업기획 신청 각종조사 및 영향평가 대상 검토 기타 관련법령 검토	사업부서 (지역교육청 포함)	(사업기획)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학교시설 (건축기획)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학교시설과 모든 유치원, 청사, 관사, 기관시설(도서관 등)
	개별 심의 (해당시)		개별 심의요구서 작성 개별 심의위원회 심의	시설과	
	사전기획·작성검토 사업계획·사전검토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회 건축기획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 의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시설과	시설과 협조(안전원 홈페이지 www.educheck.or.kr) 시설과에서 지침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공공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시설과	설계비 추정가격 5천원 원 이상
	제정투자심사	2개월(기후) 10개월(종후)	자체투자심사(40억 원 이상) 중앙투자심사(300억 원 이상)	예산정보과 재무과 (지역교육청 포함)	투자심사 전 지방교육재정 사전설정(2개월간) 및 증기경북교육정책계획 반영(전년도 예산편성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 예산편성 집행의뢰	3개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억 원 이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5천만원 초과 취득) 예산편성 요구서 작성(설계비,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비) 사업 집행 의뢰	사업부서 시설과	20여년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반드시 증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시설과 협조	

[그림 4-20]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업무 흐름도(신·증·개축) – 신설학교 제외

출처: 경상북도교육청(2024). 경상북도교육청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교육시설). p.3

- **(사전검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2년 11월에 설치되었고 '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년간 11건의 사업을 검토 진행
 - 경상북도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사업부서는 설계비 추정 가격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 검토를 신청

[표 4-12]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2~2023년)

구분	2022년	2023년	합계
접수건수(건)	(준비기간)	12	12
통지건수(건)	(준비기간)	11	11

* 사전검토를 접수할 때 일부 반려·철회사업이 있어, 접수건수와 통지건수의 차이가 있음

** 적정성검토 수행건수 포함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4.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외부전문가(건축분야) 5명이 순차적으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 담당자는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을 일부 보완하여 사업부서에 의견서 통지

※ 교육기획가 5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였으나, '24년부터 적정성검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현재 교육기획가는 미활용
- **(심의)** 경상북도교육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시설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설과 소속

 -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청 내부기준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23년 45건, '24년 11월까지 49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

[표 4-13]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건수(2022~2024년)(단위: 건)

신청기관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교육청(본청)	7	9	4	20
직속기관	0	1	7	8
교육지원청	82	35	38	155
합계	89	45	49	183

*2024년은 11월까지 운영건수를 의미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설계공모) 본청 시설과에서 설계공모 운영 지원을 담당하여, 교육청 사업의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 경상북도교육청 내부규정인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운영
 - '22년부터 총 82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하였고, 사립학교는 대행하지 않음

[표 4-14] 경상북도교육청 설계공모 운영건수(2023~2024년)(단위: 건)

신청기관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교육청(본청)	4	2	1	7
직속기관	1	0	7	8
교육지원청	39	11	17	67
합계	44	13	25	82

*2024년은 11월까지 운영건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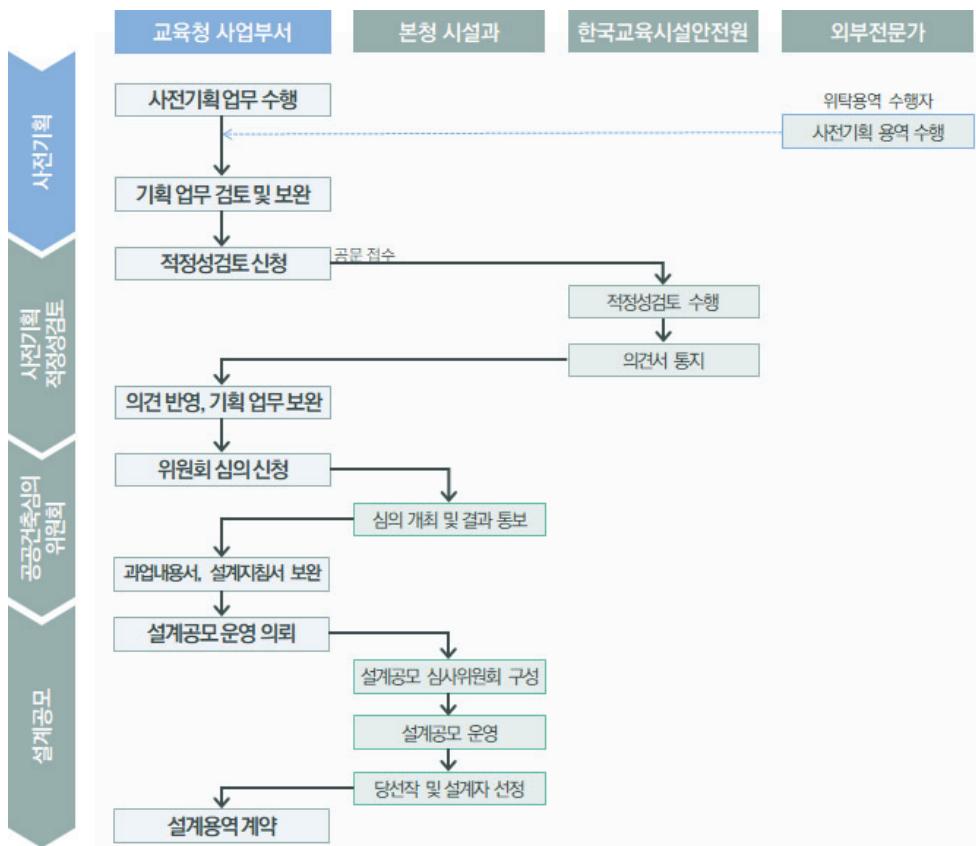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2024.11.29. 기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0)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사업(교육시설법에 따른 학교)

□ 교육청 학교 사업

- (사전기획)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사전기획을 수행하고, 사전기획 시점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고 예산편성 전에 수행하도록 함(건축기획과 동일)
 - 신설학교는 사업계획수립,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공유 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치고,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함
- (적정성검토)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검토 대상은 사업부서에서 교육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주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검토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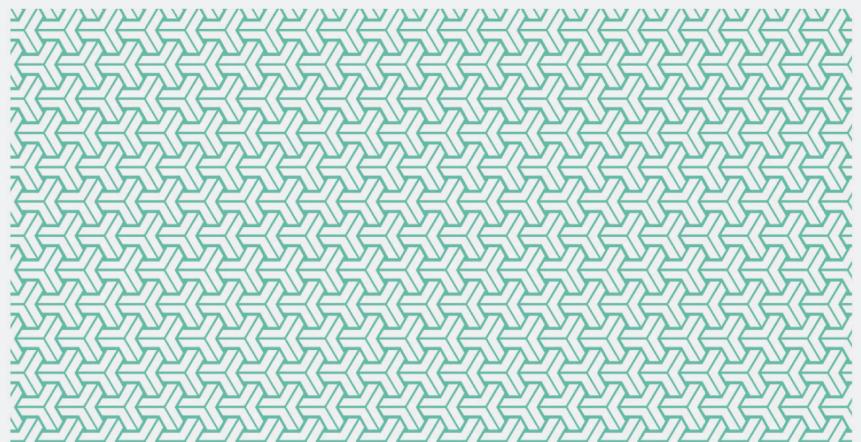
- (심의, 설계공모) 교육청 공공건축 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본청 시설과에서 수행



[그림 4-2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조성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제5장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개선 방향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의 쟁점
2. 개선 방향

1.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의 쟁점

□ 공공건축 조성의 중요성 인식

- 해당 지자체에 조성되는 공공건축의 주체인 지자체 담당자들의 공공건축 조성의 중요성을 재인식 필요
 - 2013년 건축서비스법 제정 당시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에서 제시하였던 공공기관에 부여되었던 노력 조항을 재확인하고 참여자들의 공유 필요
 - 주요한 가치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적정한 수준의 품격 확보,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되도록 함

[표 5-1] 건축서비스법 내 공공기관의 책임

2013	2018	비고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건축기획 의무화에 따라서 관련 조문 제22조의2의 1항으로 이동
	제22조의2(공공건축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기획 의무화에 따라서 관련 조문 신설 제23조의 1항에서 제22조의 2항으로 이동

* 법률 제11865호, (2013.6.4.제정)

** 법률 제15995호, (2018.12.18. 일부개정)

- 앞서 제시된 가치는 다시 건축기획 단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 공공건축센터 조직 체계

- 인력과 예산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의 조성 주체들이 주요한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스는 지역 공공건축센터의 조직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남도, 제주도와 교육청 소관 기관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임
- 부득이한 대안으로 일부 소속기관 등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경기도의 경기개발공사, 충청남도의 충남연구원이 해당하는 사례임
 - 충청남도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의 연계 방안으로 공공건축심의 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 중
 - 공공건축 관리 업무 전반은 지자체에 존재하지만 사전검토 업무 등으로 최소한의 업무로 축소되어 운영되는 한계가 있음
 - 위임받은 업무 범위가 있는 상황에서 건축기획의 의무화, 공공건축심의제도 운영을 통한 지역의 전반적인 공공건축 품질관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사전검토 제도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됨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 현행 법령에서는 크게 3가지 업무를 제시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 자문에 대한 응답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기존 법령에서 자문에 대한 응답에 속한 업무 중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는 별도 업무로 독립된 업무로 다루어져야 함
- 2019년 이전의 건축서비스법에서 다루고 있던 사전검토를 통한 품질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공공기관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의 운영을 통합하여서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건축기획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의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시설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기존의 설계관리 업무부터 관리되던 시설부서의 업무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유형, 연간 사업 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함
- 또한,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설계공모 의무화에 따른 업무도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하여서 진행 필요

[표 5-2] 건축서비스법 내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8.〉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1.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3조제2항에 따른
3.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2. 개선방향

□ 직영운영 지향

- 지역 공공건축센터 운영방식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산하기관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 수행의 처리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됨
- 관련 제도의 운영 등도 결국 지역의 공공건축 방향과 정책을 책임지고 품질관리의 의무가 있는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정책, 제도개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직업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함
- 또한, 간접운영의 경우에도 담당부서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정책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공공건축 품질관리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매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파악에 있어서도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가 아닌 센터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지역공센 협의체 회의에도 담당부서가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방안이 필요
- 이를 통해서 지역 공공건축 운영현황에서의 어려움과 개선노력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음

□ 업무범위 확대

- (설계공모 업무 포함) 기존의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건축 설계공모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함
 - 현행 법률에서는 설계공모의 경우 의무대상만 부여하고 있고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설계공모 의무화 사업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설계공모에 관한 통합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공공건축센터의 업무 역할로 설계공모 수행을 실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5-3] 건축서비스법 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

현행	개정	비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존 자문에 대한 응답에 속하지 않는 관계자에 대한 교육, 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은 문항을 조정하고
1.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1. 제23조 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로 제시
2.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2.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 자문에 대한 응답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공공건축 설계공모	

* 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현재도 서울, 부산, 제주 등 자자체에서는 설계공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인력, 예산 등의 제약으로 직접수행에는 한계가 있음

- (공공건축심의 운영, 건축기획 지원) 현행 지역공센이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였을 때, 사전검토를 업무가 중심이나 이와 연계한 공공 건축심의, 건축기획 지원까지 종합적인 업무 수행 필요

□ 설치유형별 적정 규모 설정

- 1차적으로 신청 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적정한 업무를 제시할 수 있음
 - 광역시, 광역도, 교육청 3개 유형별 조직 구성(안) 제시
 - 기준에 획일적으로 제시되었던 5명 이상에 있어서 사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원 규모 제시
 - 타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해당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
 -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중 건축기획은 직접 수행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부 사업에 한하여서 연간 5건 내외에서 수행을 기준
 - 각 업무의 주, 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분장
 - 광역도, 교육청의 연간 사업 건수는 미설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을 바탕으로 도출된 사업건수를 기준으로 고려

[표 5-4] 신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유형별 조직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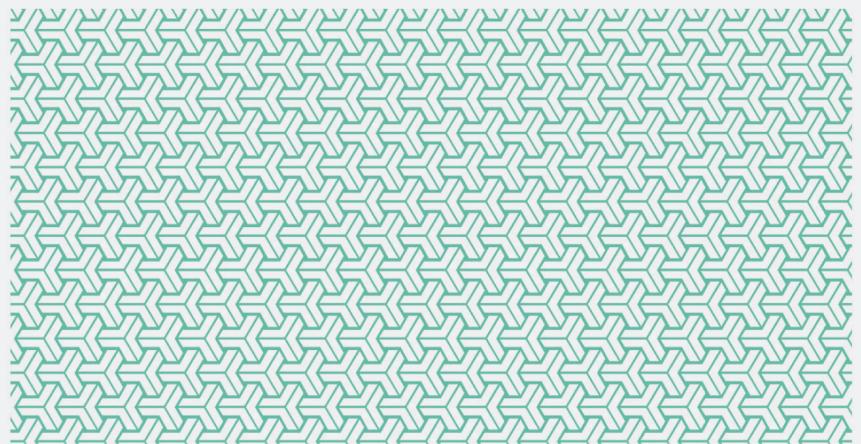
조직구성(안)		연간 사업 건	조직구성(안) (팀원별 업무분담)
광역시	팀장1인, 팀원2인	10건	a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b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운영
광역도	팀장1인, 팀원6인	60~80건 (건축기획 5건)	a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지원 b 사전검토, 건축기획 지원 c 사전검토, 건축기획 지원 d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지원 e 총괄지원, 공공건축DB구축 f 건축기획, 민간전문가 운영
교육청	팀장1인, 팀원4인	30~40건	a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지원 b 교육시설 사전기획, 사전검토 지원 c 설계공모, 교육시설 사전기획 지원 d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지원

* 연간사업 건은 사전검토 대상 사업 기준

□ 공공건축 사업 총괄관리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공공건축 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부서의 역할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필요에 따라서는 중장기, 연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실태점검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의 예산, 행정적 지원과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체계 마련
 - 현재, 설계공모 확대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별도 시스템 구축 외에도 건축 허브를 통한 설계공모 지원 시스템 구축의 사례와 같은 지원체계 필요
 - 사전검토 접수 및 검토 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서 전체 지자체 데이터와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공공건축 사업의 관리를 위한 주체로서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관심과 제고 노력 필요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공공건축 기관 관계자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정책 방향 공유 방안 마련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및 의의

□ 연구의 주요 성과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연계하여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지역 공공건축센터 설립 방안, 건축기획 연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주제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의 연구였기 때문에 기획 이후로 실행단계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유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광역시, 광역도 단위 및 교육시설과 관련한 교육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은 직영, 산하기관 위탁 지정 운영 등의 형태로 구분되었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 중인 11개소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건축서비스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업은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광역지자체에서도 직접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건축서비스법에 따른 건축물의 품격제고와 관련한 업무 중 광역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된 경우 지역 소관의 사전검토 업무를 의뢰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 외에 건축기획,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의 업무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표 6-1] 지역공센 설립된 지자체 건축물의 품격제고 업무 구분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광역		v		
기초	v	(신청)	v	v

*건축서비스법 제22조

[표 6-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광역 시도 유형의 담당업무

구분	건축기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교육	심의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충청남도	-	●	●	●	-	-	-
경기도	●	●	●	●	-	-	-
경상남도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센터에서 담당, ○: 센터가 설치된 조직 내(다른 팀)에서 담당

◎: 센터에서 공모 시 제한적 운영

△: 별도 부서(센터와 상이)에서 담당, ※: 별도 조직에서 요청 시 검토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6-3]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교육청 유형의 담당업무

구분	건축기획	사전검토	자문응답	교육	심의	설계공모	민간전문가
서울특별시교육청	●	●	●	-	●	●	●
경기도교육청	-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
경상북도교육청	-	●	●	-	○	○	-

●: 센터에서 담당, ○: 센터가 설치된 조직(과)에서 담당, -: 미운영

출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지자체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 업무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며,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에 대한 업무에서 차이는 없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는 건축서비스법 제24조의 2에 따라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필요로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아에 따라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6-4] 지역공센 미설치 지자체 건축물의 품격제고 업무 구분

국가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기초	v	v	(신청)	v
				v

*건축서비스법 제22조

□ 연구의 의의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 5년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등은 이루어진 바 없다. 지자체의 설치 신청 등에 따라서 국토부와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협력하여서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로 사전검토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가칭)지역 공공건축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여서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령에서 제시되어 있는 승인기준은 명확한 근거에서 제시되기 보다는 2014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수준을 고려하여서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국가 및 지역의 구분없이 전문인력이 10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제시도 되었으나 정책결정단계에서는 5명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5명을 확보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면, 지자체의 팀 단위의 조직은 팀장 1인, 팀원 2인으로 구성되고, 과 단위는 3개의 팀으로 구성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과장 1인, 팀장 1인, 팀원 3인 정도를 고려한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 과장, 팀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팀원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행정 지원하거나 겸하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건축관련 업무의 비중과 사업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수치적으로 적정한 사업규모에 적정한 인력 규모는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정책적 참고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설치가 승인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신청서와 현황 정보 등을 대조하는 단계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특히, 교육시설 유형에 있어서 2022년부터 「교육시설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과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에 앞서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관심과 예산, 인력 등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 현황 파악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검토 대상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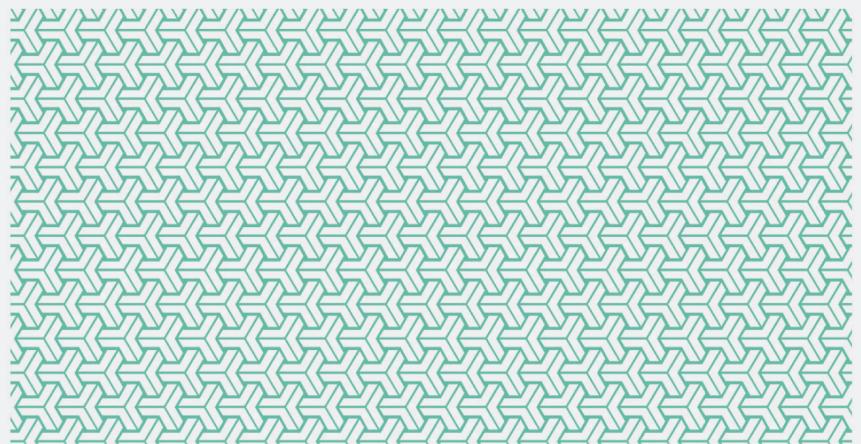
□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 관리의 주체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 다른 관리의 주체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진단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에서 지역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된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필요하다. 현재, 설계공모 확대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별도 시스템 구축 외에도 건축허브를 통한 설계공모 지원 시스템 구축의 사례와 같은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사전검토 접수 및 검토 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서 전체 지자체 데이터와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경기도교육청. 메인화면. <https://plan.goe.go.kr/index.do#>(검색일: 2024.12.1.)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센터. (2024). 경기도교육청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매뉴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센터. (2024).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매뉴
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센터. (2024). 경기도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현황.
내부자료. 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 (2024). 경상북도교육청 시설사업 표준절차 모델(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교육시설). 경상북도교육청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 회의록(2024.
8.13.). 내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 회의록(2024.
11.21.). 내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 회의록
(2024.8.12.). 내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 회의록
(2024.8.14.). 내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협의 회의록(2024.
11.28.). 내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수행현황(2024.11.24.
기준). 내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현황(2024.11.29. 기준). 내
부자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월간업무보고. 내부자료. 국가공
공건축지원센터.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공간환경전략계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024).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포털. <https://making.busan.go.kr/main>
(검색일: 2024.12.1.)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2022). 2015-2016 공공건축가 프로젝트.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67934>(검색일: 2024.11.27.)

서울특별시. (2023).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2024). 공모포털 프로젝트 서울. <https://project.seoul.go.kr/view/viewDetailNews.do>(검색일: 2024.12.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영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2).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공공건축 사
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2024).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내부자료. 서울
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운영 매뉴얼. 서울특별시교
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모포털. 아카이브.

<https://edu-design.sen.go.kr/archives?page=1&sort=desc&pageSiz=5>
(검색일: 2024.12.1.)

충청남도교육청. (2024). 충청남도교육청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 기준. 내부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202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현황. 내부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추진단. (2024).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 자문·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변경. 내부자료.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2024). 공공건축자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내부자료.
충청남도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법률 제19990호, 2024.1.9. 타법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5.15. 타법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8호, 2014.6.5. 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2024.7.18.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35호, 2021.12.28. 일부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12.20. 타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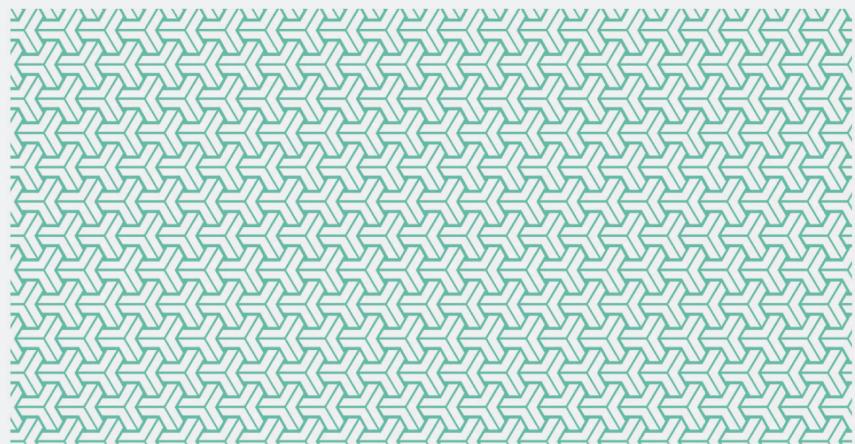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71호,
2022.7.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2024.5.23.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2023.10.24. 일부개정.

Research on local public architectural support center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Summary



Public building policies have alway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As the system is in its early stages, th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working to establish the system. As a way to do this, it first introduced the “preliminary review of public building project plans” and “activation of design competitions” to internalize the “architectural planning stage,” which is the initial stage of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In 2019, the secondary “architectural planning” and “public architecture review committee deliberation” systems were mandated to implement quality control through architectural planning for the preparation of business plans in the pre-review stage and deliberation on the review points after the pre-review.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4 to support related work, and it is operating as an organization to support related work. Since 2020, a total of 11 centers have been in operation, starting with Seoul and ending with Gyeongbuk Office of Education in 2022.

In terms of preliminary review work, the proportion of work performed by the national and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is as follows.

In 2020, when the region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s started operating, the percentage of work performed by the national center was 89%, but in 2023, it was reduced to 50%. In 2024, the number of projects carried out by local public construction centers decreased, but the number of projects carried out by the National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 remained at a similar level.

Since 2023, the Korea Educational Facilities Safety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fety Institute), a specialized organization based on the Act on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ucation Facilities Act), has been operating the pre-planning adequacy review system, and about 260 cases are conducted annually. In the case of local public centers, an average of 31 cases are conducted annuall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s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in connection with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Promotion Act.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s, architectural planning studies, and the operation of public architecture review committees. Si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at the planning stage, it was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rove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nditions in the implementation stage after planning.

The types of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parts: metropolitan cities, metropolitan provincial units, and education offices related to educational facilities. For each type of region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the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direct operation, entrusted operation, and designated operation by an affiliated organization. Currently, 11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operating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public buildings are assigned based on the entity doing business. According to Article 23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Act, when a public institution wishes to undertake a public building proje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must submit a business plan to the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and the Region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for review. Therefore, many projects can only be carried out in basic local governments, and while there are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directly carry out public building projects, they are not common. Among the tasks rela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buildings under the Architectural Services Act, the tasks that can be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are handled by local jurisdictions if a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is established. Other tasks such as architectural planning, public architectural deliberations, and design competitions shall be carried out by the entity doing the business.

For projects i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ithout a reg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performs the preliminary review,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tasks for architectural planning, public architectural review, and design competition.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Act,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public architectural support center is not mandatory and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at the will of the local governor.

There has been no evaluation of the operation status of regional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s for five years since the regulations on the grounds for establishing regional public construction support center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9. MOLIT and the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worked together to approve applications from local governments, but the approval process mainly consisted of preliminary reviews.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entative) regional public building operation standard (draft) so that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establish a new

center can refer to it. The approval standards currently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are not based on a clear rationale, but are presumed to be based on the level of the Nation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which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since 2014. In previous studies, it wa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experts should be 10 or more regardless of country and region, but it was adjusted to 5 or more at the policy-making stage, but no clear criteria were presented. However, considering the meaning of securing five people in the region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through this study, the size of the team uni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composed of one team leader and two team members, and the division level is composed of three teams, so it is possible to calculate the size of the team unit by considering one chief, one team leader, and three team members. The chief and team leader set the direction for related policies, and the team members can be considered as administrative support or combined with the organization that directly performs the work, and the proportion of construction-related work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However, there is a limit to suggesting the appropriate size of the workforce for the appropriate business size numerically,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provide policy reference points based on existing operating cases.

The study did not go as far as to compare the current information with the applications of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s that have already been approved for installation. In particular, it was not possible to examine in detail how the role of local public architectural support centers is differentiated from the specialized institutions operating under the Education Facilities Act from 2022 in terms of the types of educational facil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that do not have a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there were limitations in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ata in the absence of attention to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public buildings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in terms of budget and manpower. It was only possible to identify the work centered on the projects that were applied for preliminary review by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loc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as the main body of public building manag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dentify and diagnose the operation status of other management bodies, such as the public building review committee and private experts, and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through in-depth operation status.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level of

presenting the ground rules that can be installed by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budget and administrative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order for the system to operate effectively in the field.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separate budget support method for the operation of loc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measures to support related systems. Currently,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separate system for frontline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expansion of design competitions, support systems such as the example of establishing a design competition support system through an architecture hub are continuously needed. In addition, the existing system of the National Public Building Support Center should be expanded and reorganized to link with the data of all local governments in the pre-review and review system.

keywords

Public building, Public building Center

